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7.12.15.(금)]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안건 현황 ····· 3

1. 회계구분 ····· 3

2. 심사경과 ····· 5

Ⅱ. 예산안 총괄 ····· 4

1. 편성방향 ····· 4

2. 재정규모 ····· 6

3. 세입 예산안 ····· 7

4. 세출 예산안 ····· 9

가. 기능별 ····· 9

나. 성질별 ····· 11

다. 계속비사업 ····· 12

5. 주요 쟁점별 검토 ····· 13

가.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 13

나. 법적·의무적 경비의 우선 편성 필요 ····· 18

다. 예산 관련 조례 제·개정의 사전절차 이행 필요 ····· 20

라. 출자·출연금 관리 철저 ····· 22

마.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 29

바.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 철저 이행 ····· 31

Ⅲ. 회계별 검토 ····· 38

1. 일반회계 ····· 38

가. 총 괄 ····· 38

나. 세 입 ····· 42

다. 세 출 ····· 56

2. 특별회계 ····· 122

가. 총 괄 ····· 122

나. 회계별 검토 ····· 128

3. 기 금 ····· 183

Ⅳ. 심사결과 ····· 214

1. 질의·토론 요지 ····· 214

2. 심사결과 ····· 214

3. 소수의견 ····· 220

4. 기타사항 ····· 221

Ⅰ 안건현황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11. 3.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2. 6.

라. 상정일자 : 2017. 12. 6.(제1차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이 용 철

○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Ⅱ 예산안 총괄

1. 편성방향

○ 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 건전화 성과를 시민 행복과 공감이란 시정 방침에 따라 편성했다.'고 설명[1]하며,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음.

- 첫째,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예산의 낭비요인과 중복사업은 철저히 제거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원칙을 준수하며
- 둘째, 그 동안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복지, 대중교통, 환경분야 등 시민행복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집중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시민편의와 직결된 SOC사업 등도 선별하여 편성하였음.

○ 시는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39.9%에 이르러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로터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바 있음. 지난 3년간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채무비율이 6월말 24.1%에 이어 9월말에는 이보다 더 낮아진 22.9%를 기록하여 재정정상단체 기준인 2분기 연속 25% 이하를 충족함에 따라, 재정위기 주의 단체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21.3% 증가하여 2조 8,774억 원이며, 수송및교통 분야는 28.7%가 증가한 1조 14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16.3%가 늘어난 8,566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03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외에도 10개 군·구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도 증액되었음.

○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증감 추이를 보면, 2018년도 예산안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5년도에는 지방채 신규발행의 어려움, 대규모 재산 매각 중단 등으로 전년 대비 0.9% 감액 편성하였지만, 2016년도에는 LTV·DTI 규제완화와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 및 송도 8공구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5.5%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예산안도 채무비율을 낮춤과 동시에 인천시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1.5% 증액되었음.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추이>

(단위 : 억원 / %)

회 계 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계	78,373	77,646	△0.9	81,902	5.5	83,166	1.5	90,271	8.5
일반회계	52,638	49,774	△5.4	58,573	17.7	63,017	7.6	65,645	4.2
특별회계	25,735	27,872	8.3	23,329	△16.3	20,149	△13.6	24,626	22.2
공기업	13,327	14,676	10.1	11,879	△19.1	10,039	△15.5	9,976	△0.6
기타	12,408	13,195	6.3	11,450	△13.2	10,110	△11.7	14,650	44.9

2.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9,631,830	100.0	8,945,190	100.0	686,640	7.7
소 계	9,027,146	93.7	8,316,642	93.0	710,504	8.5
일 반 회 계	6,564,523	68.1	6,301,734	70.5	262,789	4.2
특 별 회 계	2,462,623	25.6	2,014,908	22.5	447,715	22.2
공기업특별회계	997,591	10.4	1,003,859	11.2	△6,268	△0.6
기 타 특 별 회 계	1,465,032	15.2	1,011,049	11.3	453,983	44.9
기 금	604,684	6.3	628,548	7.0	△23,864	△3.8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이며, 금액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일부 끝자리 수의 합이 불일치 할 수 있음 - 이하 표 같음

○ 2018년도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7.7%, 6,866억 원이 증가한 9조 6,318억 원 규모임.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5%, 7,105억 원 증가한 9조 271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2%인 2,628억 원이 증가한 6조 5,645억 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2%, 4,477억 원 증가한 2조 4,626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3.8%, △239억 원이 감액된 6,047억 원 규모로 수립되었음.

3. 세입 예산안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9조 271억 원으로 2017년도 세입규모 8조 3,166억 원 대비 8.5%인 7,105억 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재정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재원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중에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15.5%, 5,154억 원이 증가한 3조 8,321억 원이며,

○ 또 다른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1조 7,622억 원보다 20.8%, △3,669억 원이 감소한 1조 3,953억 원 규모임.

-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9억 원이 감소한 1조 247억 원이며,
-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650억 원이 감소한 3,706억 원임.

○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대비 2.6%인 130억 원이 증가한 5,180억 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9.0%인 3,683억 원이 증가한 2조 3,040억 원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3.3%인 1,844억 원이 증가한 9,776억 원으로

-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등은 전년예산보다 1,412억 원이 증가한 2,772억 원으로 103.8%가 증가한 규모이며,
- 내부거래는 6.6%인 433억 원이 증가한 7,005억 원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9,027,146	100.0	8,316,642	100.0	710,504	8.5
지 방 세	3,832,141	42.4	3,316,709	39.8	515,432	15.5
보 통 세	3,339,035	37.0	2,846,138	34.2	492,897	17.4
목 적 세	463,306	5.1	441,971	5.3	21,335	4.8
지난년도수입	29,800	0.3	28,600	0.3	1,200	4.2
세 외 수 입	1,395,307	15.5	1,762,205	21.2	△366,898	△20.8
경상적세외수입	1,024,708	11.4	1,026,604	12.4	△1,896	△0.2
임시적세외수입	370,599	4.1	735,601	8.8	△365,002	△49.6
지방교부세	518,000	5.7	505,000	6.1	13,000	2.6
보 조 금	2,304,048	25.5	1,935,702	23.3	368,346	19.0
국고보조금	2,059,466	22.8	1,686,187	20.3	373,279	22.1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8,502	1.5	150,414	1.8	△11,912	△7.9
기 금	106,080	1.2	99,101	1.2	6,979	7.0
지 방 채	0	0.0	3,800	0.1	△3,800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77,650	10.9	793,226	9.5	184,424	23.3
보전수입등	277,171	3.1	136,011	1.6	141,160	103.8
내부거래	700,479	7.8	657,215	7.9	43,264	6.6

4. 세출예산안

가. 기능별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17.1%인 △2,349억 원이 감소된 1조 1,427억 원이며, 공공질서및안전은 9.3%인 162억 원이 증가한 1,903억 원, 교육 분야는 5.7%, 393억 원 증가한 7,241억 원임.

○ 문화및관광 분야는 전년도 대비 9.0%, 359억 원 증가한 4,373억 원, 환경보호는 16.3%인 1,202억 원이 증가한 8,566억 원, 사회복지는 21.3%인 5,048억 원이 증가한 2조 8,773억 원이며, 보건은 △1.8%, 6억 원이 감소한 340억 원임.

○ 농림해양수산은 전년대비 △4.4%인 △65억 원이 감소한 1,409억 원, 산업·중소기업은 7.9% 증가한 624억 원, 수송및교통 분야는 28.7%, 2,232억 원이 증가한 1조 14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0%, △451억 원이 감소한 8,498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3.8% 감소한 384억 원임.

○ 예비비는 전년대비 13.4%인 77억 원이 증가한 656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8.4%인 472억 원이 증가한 6,062억 원이 편성되었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9,027,146	100.0	8,316,642	100.0	710,504	8.5
일반공공행정	1,142,703	12.7	1,377,592	16.6	△234,889	△17.1
공공질서및안전	190,345	2.1	174,173	2.1	16,172	9.3
교육	724,138	8.0	684,850	8.2	39,288	5.7
문화및관광	437,279	4.8	401,356	4.8	35,923	9.0
환경보호	856,555	9.5	736,321	8.8	120,234	16.3
사회복지	2,877,342	31.9	2,372,504	28.5	504,838	21.3
보건	34,004	0.4	34,618	0.4	△614	△1.8
농림해양수산	140,922	1.6	147,467	1.8	△6,545	△4.4
산업·중소기업	62,447	0.7	57,883	0.7	4,564	7.9
수송및교통	1,001,417	11.1	778,229	9.4	223,188	28.7
국토및지역개발	849,788	9.4	894,865	10.8	△45,077	△5.0
과학기술	38,402	0.4	39,901	0.5	△1,499	△3.8
예비비	65,627	0.7	57,900	0.7	7,727	13.4
기타	606,177	6.7	558,983	6.7	47,194	8.4

나. 성질별

○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8.6%인 363억 원 증액, 물건비는 240억 원(8.9%) 증액, 경상이전은 7,959억 원(18.9%)이 증액 편성되었음.

○ 자본지출은 전년예산 대비 2,334억 원(20.9%) 증액, 융자및출자는 69억 원(15.9%) 증액, 보전재원은 △3,546억 원(△68.0%)을 감액, 내부거래는 △207억 원(△1.5%)이 감액 편성되었음.

○ 예비비및기타는 △107억 원(△3.1%) 감액 편성되었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9,027,146	100.0	8,316,642	100.0	710,504	8.5
인 건 비	457,581	5.1	421,281	5.1	36,300	8.6
물 건 비	294,678	3.2	270,695	3.3	23,983	8.9
경 상 이 전	4,999,145	55.4	4,203,246	50.5	795,899	18.9
자 본 지 출	1,350,619	15.0	1,117,180	13.4	233,439	20.9
융 자 및 출 자	50,190	0.5	43,312	0.5	6,878	15.9
보 전 재 원	167,141	1.9	521,716	6.3	△354,575	△68.0
내 부 거 래	1,369,859	15.2	1,390,566	16.7	△20,707	△1.5
예 비 비 및 기 타	337,933	3.7	348,646	4.2	△10,713	△3.1

다. 계속비사업

○ 지방재정법 제42조[2]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계획이나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 부진이나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목적으로 한 계속비사업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임.

○ 2018년도 예산안의 계속비사업은 81건이 있으며, 이 중 변경내역은 76건이 있음.

-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이 8건이 있고, 투자계획 변경이 23건, 신규사업은 일반회계의 부평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5건이 있음.

---

2)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5. 주요 쟁점별 검토

가.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아동수당급여지급** 등 101건, 2,493억 원임.

○ 신규사업은 전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 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임.

○ 또한 신규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기존 사업의 경우 외부환경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신규사업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관계로 수요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예측 실패, 필요한 행정절차 고려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매년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을 해소하면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3억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3)]>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신 규 사 업	예산액
계		249,348
정보화담당관실	통합백업 시스템 구축	415
정보화담당관실	클라우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937
재정관리담당관실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27,600
세정담당관실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1,503
안전정책과	CCTV통합관제 센터 구축	1,113
재난예방과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지원 사업	600
총무과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5,788
민원실	기록관리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315
공감복지과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1,811
공감복지과	사회복무 제도지원	5,646
공감복지과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4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산품판매 시설 이전	2,299
보훈 다문화과	전몰군경유족 수당 지원	810
보훈 다문화과	보훈예우 수당 지원	2,052
보건정책과	건강취약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300
보건정책과	시도감염병 관리본부 운영지원	611
건강증진과	방문건강 관리사업 지원	2,155

3)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199~280
'14. 세출예산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1억원 이상)'

부 서 명	신 규 사 업	예산액
건강증진과	치매 안심센터 기능보강	750
건강증진과	치매 안심돌봄 센터 운영지원	2,183
건강증진과	치매 안심센터 운영지원	9,504
건강증진과	치매전담형 요양 시설 신축	2,189
보육정책과	다자녀 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529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14,259
보육정책과	도담도담 장난감 보급	600
보육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900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급여 지급	84,268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제도 구축(보조인력배치)	357
노인정책과	강화군 노인복지관 건립	4,000
문화예술과	천개의 생활문화 동아리 육성 및 지원	600
문화예술과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	800
문화예술과	인천형 예술인 지원	500
문화콘텐츠과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1,000
문화콘텐츠과	e스포츠 등 건전 게임문화 확산	320
문화콘텐츠과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	1,200
문화재과	박두성 생가 복원사업	300
문화재과	고려역사 문화제 개최	400
관광진흥과	섬 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	300
관광진흥과	애인페스티벌 개최	1,100
관광진흥과	1883 개항장 관광명소화 사업	600
관광진흥과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	472
체육진흥과	제 17회 세계 검도선수권	400
체육진흥과	LPGA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825
체육진흥과	연수체육 문화센터 건립	3,126
건축계획과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연구용역	300
건축계획과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	300

부 서 명	신 규 사 업	예산액
도 시 경 관 과	자월도 자월항 경관개선 사업	750
도 로 과	계양구 효성동 경남아파트일원 도로 개설(소1-3호선)	1,400
도 로 과	경관(3D아트) 도로 조성사업	500
도 로 과	105호 고가교 단속카메라 설치	300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부천시계)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	300
녹 색 기 후 과	제 48차 IPCC 총회 개최도시 부담금	300
녹 색 기 후 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320
대 기 보 전 과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496
대 기 보 전 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500
수 질 환 경 과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00
수 질 환 경 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00
하 수 과	부평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1,083
하 수 과	석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64
공 원 녹 지 과	중앙공원 도시소생태계 조성	400
공 원 녹 지 과	백범도시숲 조성	600
공 원 녹 지 과	시민편익시설 (무장애 나눔길)	350
버 스 정 책 과	전기 저상버스 구입보조(시범사업)	1,495
택 시 화 물 과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장애인 콜택시 신규차량 구입)	440
택 시 화 물 과	택시 IC카드단말기 교체 지원	2,224
택 시 화 물 과	법인택시 차량영상기록 장치 설치	808
택 시 화 물 과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TIMS) 구축	544
택 시 화 물 과	화물 자동차 첨단 안정장치 장착 지원	1,340
택 시 화 물 과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440
교통정보 운영과	사람우선 교통문화 조성기반 마련	670
경 제 정 책 과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600
경 제 정 책 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000
경 제 정 책 과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이차보전)	300

부 서 명	신 규 사 업	예산액
경 제 정 책 과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설립	588
일 자 리 정 책 과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3,045
일 자 리 정 책 과	인천형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사업	800
일 자 리 정 책 과	남동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위탁 대행비	968
창 업 지 원 과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1,200
창 업 지 원 과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1,100
신 성 장 산 업 과	인천시청자 미디어 센터 운영지원	490
신 성 장 산 업 과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400
에 너 지 정 책 과	전기버스 구매 (10대)	1,000
농 축 산 유 통 과	농기계임대사업	750
농 축 산 유 통 과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비 지원	360
농 축 산 유 통 과	논타작물재배지원	2,111
항 만 과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지원	3,434
항 만 과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	500
해 양 도 서 정 책 과	명절(설, 추석) 여객운임 지원	1,620
해 양 도 서 정 책 과	출향민 여객선 운임지원	300
해 양 도 서 정 책 과	석모도 노을둥지장터 조성	300
수 산 과	어촌특화 지원센터 지정 운영	500
수 산 과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1,575
수 산 과	수산시장 시설개선	555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대기관리 시스템운영	406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대기관리 시스템운영	400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공사	4,000
여 성 의 광 장	키즈카페(가칭) 설치	500
인천대공원사업소	대공원 상수도관 증설공사	450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대공원 무장애길, 개울숲 화장실 신축공사	300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저수조 보수·보강 사업	935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물 안전성 분석 장비구입	2,000

나. 법정·의무적 경비의 우선 편성 필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4]에 따르면, 법령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에 발생되는 법정·의무적 경비는 1조 7,1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도 예산안 기준 미부담액은 5,439억 원으로 2017년 말 기준 미부담액 대비 923억 원이 증가하였음. 재량지출의 규모가 증가되고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가 커질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법정·의무적 경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2018년도 예산안 기준 법정경비 미부담액은 2018년도에 발생하는 법정경비 중 학교용지부담금 일부와 재해구호기금 127억 원을 반영하지 못하여, 2017년말보다 197억 원이 증가한 1,874억 원임.

- 학교부지부담금 발생액 중 당해년도분 59억 원은 전액 반영하였으나, 과년도분 발생액 107억 원 중 37억 원만 반영하고, 70억 원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5]에 따라, 2018년도 기준으로 기

---

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5) 재해구호법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금적립액이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127억 원인데, 2018년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함.

○ 기타 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은 3,565억 원으로 2018년도 발생하는 회계이관 토지대금 중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년 대비 726억 원이 증가함.

<2018년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예산편성 현황[6]>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미부담	2018년		2018년 미부담	비 고
			발생분	반영액		
계		4,516	17,186	16,263	5,439	
법정경비	소 계	1,677	15,264	15,067	1,874	
	군구조정교부금		6,926	6,926	0	`18년도 반영내역 - 조정교부금 6,811억 - 면허세 보전분 115억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394	6,394	0	
	학교용지부담금		166	96	70	`18년도 반영내역 - 현년도분 59억 - 과년도분 37억
	재난관리기금	1,339	337	337	1,339	
	재해구호기금	338	127	0	465	
	지역상생발전기금		384	384	0	
	시세징수교부금		930	930	0	
기타의무적경비	소 계	2,839	1,922	1,196	3,565	
	회계이관 토지대금	2,794	1,807	1,081	3,520	`18년도 반영내역 - 경제청 1,046억 - 상수도 35억
	인천T/P정상화자금지원		115	115	0	
	기 타	45	0	0	45	아트센터 건립 45억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6)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636
'27. 2018년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예산편성 현황'

다. 예산 관련 조례 제·개정의 사전절차 이행 필요

○ 지방재정법 재36조 제1항[7]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는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특별회계의 세출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예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음.

- 또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금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심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확정을 전제로 예탁금과 예수금이 예산안으로 편성·제출되었는데, '세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예산안 심사가 중지되었고, 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인 산업위원회에서 11월 30일 심사예정이었으나 11월 28일 제출자의 요청으로 의안이 철회되었음.

---

7)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변경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은 제출되지 않았는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편성된 문학공원 조성, 장미공원 조성,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자치단체공원조성 지원 사업은 삭감되어야 할 것이고, 의안이 철회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정책도 일부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관련 공원조성사업의 추진여부와 재원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예산안과 관련 의안의 소관 위원회가 다를 경우 위원회가 서로 다른 내용의 의결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논란과 예산안의 수정이 수반될 수 있을 것임. 향후 지방재정법과 관련 규정 등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8]에 따라 예산과 관련된 의안은 반드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8)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17. 7.) p.350

라. 출자·출연금 관리 철저

○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자·출연금은 1,634억 원이며, 33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음.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9)]

○ 현재 우리 시는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일 회기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동의안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

-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지만, 출자·출연 예산안을 동의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고 있어 동의안과 예산안 심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9)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또한 출자·출연 동의안은 예산안과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출자·출연금 규모가 수정된 위원회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기관의 출자·출연금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가 서로 다른 의결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출자·출연 동의안의 주요골자와 취지는 출자·출연금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 여부만 결정할 뿐이고 최종적인 출자·출연금의 규모는 예산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출자·출연 동의 여부를 득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금 규모가 4,861억 원에 달하고 있고 향후에도 출자·출연금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2018년도 예산안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사업[10)]>

(단위:백만원)

출연·출자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16	`17	`18	
계		150,011	172,707	163,371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지원	795	1,000	1,435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1,050	1,550	8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5,920	6,640	7,4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지원	200	200	2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60	60	6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	26,100	27,6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역상생 발전기금	32,515	35,072	38,36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30	389	422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운영지원	4,674	4,659	5,679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1,407	1,932	2,256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운영 사업비 보조	1,200	5,505	4,831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	200	500	
인천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생애처음 지원사업	-		30	
인천문화재단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	-		5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문화산업 진흥지구 조성	600	750	75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문화 콘텐츠 기반 구축	1,000	1,200	1,000	

10)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564~592 '20. 최근 3년간 출연금, 출자금 예산편성 현황(사업내용 및 출연·출자 근거)'
p.740~741 '5. 최근 3년간 출연금, 출자금 예산편성 현황(출연·출자 근거명시)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출연·출자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16	`17	`18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1,650	1,200	1,5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	-	1,000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및 사업비	680	718	1,000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	2,000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기후 환경연구 센터 지원	0	269 시)269	299 시)299	
인천교통공사	운영비 보조	8,362	0	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교통공사	지하철 노후 시설장비 교체	5,000	5,000	10,0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교통공사	터미널 임대 손실보전	20,000	20,000	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2호선 운영비 등	25,000	0	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교통공사	무임수송 보전금	5,000	0	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교통공사	2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0	0	2,0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사업	2,244	2,500	2,839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희망지원 사업(보증 지원)	130	130	130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0	1,800	1,000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0	0	1,600	
신용보증재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0	0	2,0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제물포 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1,471	2,097	2,206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청년사회 진출지원 사업	-	838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1,2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청년면접 지원서비스			100	

출연·출자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16	`17	`18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청년고용 지원인턴사업	400	1,825	2,64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	-	-	1,1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창업재기 펀드		2,0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지피지기창업성공		102	1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창업 보육특화 시스템 구축			15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I-스타트업 플러스 한마당 개최		15	2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창업 동아리			58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다누리 마케터창업센터		60	9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40플러스 시니어 창업스쿨			4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37	44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창조경제 혁신센터	1,000	1,000	1,0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청년창업 챌린지 사업			8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가 정신교육			15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	1,500	2,197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지역SW기업성장지원	285	285	285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지역SW융합 클러스터 구축·지역SW융합 클러스트구축·창조성장벤처펀드조성	5,000	3,300	3,3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N방송 운영	500	460	45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지원	-	-	49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뷰티산업 육성지원	850	1,000	1,0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출연·출자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16	`17	`18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 운영사업	-	200	2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바이오아시아 국제교류협의회운영	-	-	9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바이오신업육성 전문훈련센터지원사업	-	-	2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 케어제품개발지원사업	-	-	25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첨단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육성지원사업	-	400	7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730	674	674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410	380	5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 자금지원	10,000	12,000	11,5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운영비지원	4,000	3,500	4,4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지능형 로봇산업육성	600	300	3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로봇산업클러스터 구축	-	-	400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로봇랜드 공익시설 운영지원	-	943	2,935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과학기술상 시상[격년제]	16	-	16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300	300	351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미추홀아이마켓 운영	357	192	213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운영	40	40	5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 수수료	0	0	12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우수기업 선정 관련 현장 실사 및 컨설팅	25	25	4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수출지원단 지원	60	60	6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30	35	40	

출연·출자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16	`17	`18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업광고지원	50	50	1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해외지사화 사업	40	40	4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베트남인천 우수상품 전시회	0	0	2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210	270	31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제품 전시회	70	70	7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제품국내전시회(공산품) 개별지원	0	0	2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지원	100	100	15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100	30	1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쾌속조형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0	300	3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200	200	2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중소기업 모토시험 인증지원	100	0	2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	250	300	6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	405	500	
인천신학융합원	인천신학융합 지구조성	-	11,500	-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스마트시티 민관협력 법인 출자금			785	제245회 정례회 안건 제출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인천글로벌 캠퍼스 운영 재단 출연금	5,000	7,000	5,000	

마.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 우리 시는 2009년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고, 2014년도 AG 관련 지방채를 발행[11]함에 따라 채무가 증가하였음.

< 채 무 현 황[12] >

(연말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잔 액	**31,587**	**32,581**	**32,205**	**28,634**	**22,517**
일반회계	11,296	10,635	10,425	8,134	4,086
A G	10,230	10,350	10,077	9,226	8,575
도시철도사업	1,698	1,878	1,903	1,572	1,155
하수도사업	1,344	1,180	981	785	605
경제자유구역사업	755	2,060	1,954	1,847	805
지역개발채권	6,264	6,478	6,865	7,070	7,291
발 행	**6,750**	**4,090**	**2,999**	**1,210**	**1,174**
일반회계	1,718	0	843	0	0
A G	3,380	740	0	0	0
도시철도사업	163	340	432	0	0
하수도사업	0	0	0	0	0
경제자유구역사업	0	1,400	0	0	0
지역개발채권	1,489	1,610	1,724	1,210	1,174
상 환 (원금)	**3,782**	**3,096**	**3,375**	**4,781**	**7,291**
상 환 (이자)	**918**	**1,089**	**807**	**820**	**772**
채 무 비 율	**35.7%**	**37.5%**	**33.4%**	**30.4%**	**22.8%**

11) AG 관련 지방채 : 1조 970억 원, 2017년말(추정) AG 채무잔액 : 8,575억 원(市 채무의 38.1%)

12)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194
'12. 채무관리 계획'

○ 지난 3년간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채무비율이 6월말 24.1%, 9월말 22.9%를 기록하여 재정정상단체 기준인 2분기 연속 25% 이하를 충족함에 따라 재정위기 주의 단체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12월말에는 채무비율이 이보다 더 낮아진 2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매출공채[13]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기상환을 차질 없이 실시하며,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추가 상환으로 채무규모 및 채무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채무현황[14] >

(연말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잔 액	22,517	20,398	17,877	15,138	13,553	12,520
일반회계	4,086	3,358	2,514	1,651	940	631
A G	8,575	7,925	6,819	5,735	4,766	3,837
도시철도사업	1,155	959	681	299	265	234
하수도사업	605	454	317	207	128	65
경제자유구역사업	805	805	805	775	740	610
지역개발채권	7,291	6,897	6,741	6,471	6,714	7,143
발 행	1,174	1,182	1,549	1,537	1,453	1,453
도시철도사업	0	0	97	84	0	0
지역개발채권	1,174	1,182	1,452	1,453	1,453	1,453
상 환 (원금)	7.291	3,300	4,070	4,276	3,038	2,486
정기상환	3.638	3,300	4,070	4,276	3,038	2,486
조기상환	3.653	0	0	0	0	0
상 환 (이자)	772	608	560	490	330	257
채 무 비 율	22.8%	20.5%	17.2%	14.4%	12.6%	11.1%

13)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14)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194
'12. 채무관리 계획'

바.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 철저 이행

○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1,5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0%인 △3,216억 원이 대폭 감소되었음.

- 이는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 재정담당관실에서 지난 8월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시 의회 동의 절차 이행 철저를 당부하며, 2017년 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무 중 민간위탁 사무로 보기 어려운 51건, 3,510억 원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편성시 통계목을 재검토[15]하도록 하였는데,

-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수수료**(예산서안 1165p) 4,405억 원 등의 사업이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조정되었기 때문임.

<연도별 민간위탁금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454,723	472,689	17,966	4.0	151,078	△321,611	△68.0

15)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철저(재정관리담당관-8284, 2017.08.22. 시행)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16]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17]에 따라 사무를 민간 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18]에 따르면,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 이 중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함.

---

16)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8)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19]에 따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이 해당됨.

○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사무가 민간위탁에 적합한 사무인지, 수탁기관은 지방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기관인지를 명확히 하고 의회 동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18년도 예산안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소 관 부 서	구 분	사 업 명	금 액
계				151,078
1	교육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인천영어마을 운영	2,185
2	총무과	일반회계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706
3	총무과	일반회계	직원 마음건강사업 지원	200
4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통일관 민간위탁 관리	188
5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	460

19)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연번	소 관 부 서	구 분	사 업 명	금 액
6	지역공동체과	일반회계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779
7	지역공동체과	일반회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260
8	지역공동체과	일반회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사무소 이전	26
9	민원실	일반회계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운영 위탁비	2,438
10	공감복지과	일반회계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211
11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94
12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062
13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488
14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00
15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	300
16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00
17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시비지원 활동보조지원사업 전자바우처시스템운영	30
18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320
19	보훈다문화과	일반회계	광복회관 관리운영	35
20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한센병관리 지원	70
21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85
22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원단 운영	69
23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지원	50
24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등 지원	90
25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348
26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마음건강관리 지원	70
27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정신건강연구 및 조사 등 지원	20
28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821
29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	32
30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광역치매센터 운영	590
31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치매안심전문학교 운영 등	158
32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120
33	여성정책과	일반회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476
34	여성정책과	일반회계	긴급피난처 기능보강비	8
35	여성정책과	일반회계	도서지역 찾아가는 '가정·성폭력 아동상담소'운영사업	20
36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보수교육 지원	137

연번	소 관 부 서	구 분	사 업 명	금 액
37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35
38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상담전문요원 배치	36
39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가정양육 지원(직접)	55
40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보육정보사업	61
41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어린이집 지원 사업	169
42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도담도담 장남감월드 운영	374
43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평가인증 등 컨설팅 사업	95
44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어린이집 조직증진 및 갈등교육(주민참여 예산)	40
45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부모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	2
46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 평가회 개최	5
47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Non-stop 출산장려사업 지원	255
48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345
49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55
50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150
51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시 노인복지관 운영	459
52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373
53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203
54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및 지원	600
55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인천수봉문화회관 위탁관리	485
56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인천국악회관 위탁관리	139
57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미추홀문화회관 위탁관리	305
58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문학시어터 위탁관리	285
59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시립도서관 위탁관리비(도서관발전진흥원)	3,642
60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도서관발전진흥원)	55
61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진흥원)	148
62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및 자원활동가 지원(진흥원)	253
63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도서관 독서동아리 300 육성 사업	6
64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책, 피어라 인문학 콘서트	50
65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진흥원)	14
66	문화콘텐츠과	일반회계	영상산업 육성	2,411

연번	소 관 부 서	구 분	사 업 명	금 액
67	문화재과	일반회계	은율탈춤전수관 위탁관리	123
68	문화재과	일반회계	인천도호부청사 위탁관리	330
69	문화재과	일반회계	구)제물포구락부 위탁관리	155
70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시청운동경기부 위탁운영	8,264
71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200
72	대기보전과	일반회계	취약지역 도로 먼지청소	1,000
73	수질환경과	일반회계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70
74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숲해설가	88
75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유아숲 교육 운영	110
76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경상)(직접)	40
77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상인교육관 운영비 지원	20
78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설립	588
79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	43
80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	33
81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 대행비	968
82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75
83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620
84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마을기업 교육 컨설팅 지원	130
85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시유지식재산권 및 직무발명 관리	100
86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야간 및 휴일 구조(포획) 대행	12
87	수산자원연구소	일반회계	청사경비 용역	99
88	수산기술지원센터	일반회계	수산생물질병관리 위탁교육	5
89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특별회계	수도검침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8,229
90	하수과	하수도특별회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1,092
91	하수과	하수도특별회계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34,824
92	하수과	하수도특별회계	검단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11,359
93	경제청	경제청특별회계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	180
94	경제청	경제청특별회계	생태문화교육 위탁운영	170
95	경제청	경제청특별회계	경원재앰버서더호텔 위탁운영 등	5,216

연번	소 관 부 서	구 분	사 업 명	금 액
96	경제청	경제청특별회계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8,648
97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문학박태환수영장 위탁	3,683
98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위탁	3,364
99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선학하키경기장 위탁	976
100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탁	1,912
101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선학파크골프장 위탁	295
102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옥련국제사격장 위탁	1,033
103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남동체육관/아시아드럭비경기장 위탁	1,697
104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신설경기장 조경관리	441
105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도원체육관/수영장 위탁	3,248
106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	3,386
107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소규모체육시설 위탁	1,009
108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야구장 위탁	1,261
109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문학경기장 위탁	1,153
110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문학경기장내 체육시설 운영	1,242
111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위탁	2,489
112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승기잔디구장 위탁	249
113	체육진흥과	소방특별회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 위탁	2,807
114	대기보전과	매립지특별회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사업	300
115	수질환경과	검단폐수특별회계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493

Ⅱ 회계별 검토

1. 일반회계

가. 총 괄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예산 대비 4.2%인 2,628억 원이 증가한 6조 5,645억 원 규모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 지방세는 3조 8,32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 5,154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3,781억 원(27.0%), 993억 원(20.5%)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2,28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9%, △3,559억 원 감소하였는데, 세입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이 전년 본예산 대비 △80.2%, △3,261억 원 대폭 감소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대비 3.1%인 150억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15.5%인 2,458억 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727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575억 원(△47.7%)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 중 예탁금및예수금이 전년 대비 △1,858억 원(△93.0%) 감소되었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6,564,522	100.0	6,301,733	100.0	262,789	4.2
지 방 세	3,832,141	58.4	3,316,709	52.6	515,432	15.5
보 통 세	3,339,035	50.9	2,846,138	45.2	492,897	17.3
목 적 세	463,306	7.1	441,971	7.0	21,335	4.8
지난년도수입	29,800	0.4	28,600	0.4	1,200	4.2
세 외 수 입	228,587	3.5	584,496	9.3	△355,909	△60.9
경상적세외수입	83,754	1.3	75,476	1.2	8,278	11.0
임시적세외수입	144,833	2.2	509,020	8.1	△364,187	△71.6
지 방 교 부 세	500,000	7.6	485,000	7.7	15,000	3.1
보 조 금	1,831,070	27.9	1,585,302	25.2	245,768	15.5
국 고 보 조 금	1,620,366	24.7	1,364,062	21.7	256,304	18.8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2,955	1.7	130,827	2.1	△17,872	△13.7
기 금	97,749	1.5	90,413	1.4	7,336	8.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2,724	2.6	330,226	5.2	△157,502	△47.7
보 전 수 입 등	36,114	0.5	1,796	0.0	34,318	1911.0
내 부 거 래	136,610	2.1	328,430	5.2	△191,820	△58.4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 **사회복지** 분야가 2조 4,2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9%, 3,86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 1,024억 원, 아동수당 843억 원, 보훈 유공자 예우 예산 86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25억 원 등의 증가에 기인함.

- **환경보호** 분야는 2,173억 원으로 전년보다 35.0%, 564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52억 원, 상방마을 하수도정비 65억 원 등의 증가에 기인함.

-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282억원(27.4%), **교육** 분야는 383억 원(5.7%)이 증가하였으며, **문화및관광** 210억 원(8.4%), **기타** 분야 398억 원(8.5%), **예비비** 77억 원(13.4%)도 전년보다 증가함.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조 1,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01억 원(△17.4%) 감소하였는데, 특히 지방채 상환액의 대폭 감소로 **재정·금융** 부문이 전년예산 보다 △4,241억 원(△75.2%) 대폭 감소하였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6,564,522	100.0	6,301,734	100.0	262,788	4.2
일반공공행정	1,137,479	17.3	1,377,592	21.9	△240,113	△17.4
공공질서및안전	130,850	2.0	102,684	1.6	28,166	27.4
교육	710,619	10.8	672,317	10.7	38,302	5.7
문화및관광	271,719	4.1	250,756	4.0	20,963	8.4
환경보호	217,337	3.3	160,964	2.6	56,373	35.0
사회복지	2,425,462	37.0	2,039,220	32.4	386,242	18.9
보건	34,004	0.5	34,618	0.5	△614	△1.8
농림해양수산	140,922	2.1	147,467	2.3	△6,545	△4.4
산업·중소기업	55,890	0.9	57,883	0.9	△1,993	△3.4
수송및교통	610,221	9.3	615,443	9.8	△5,222	△0.9
국토및지역개발	217,198	3.3	275,965	4.4	△58,767	△21.3
과학기술	38,402	0.6	39,901	0.6	△1,499	△3.8
예비비	65,627	1.0	57,900	0.9	7,727	13.4
기타	508,792	7.8	469,024	7.4	39,768	8.5

나. 세 입

1) 지 방 세

○ 시 재정운용의 근간이고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5%, 5,154억 원이 증가한 3조 8,321억 원임.

-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세목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3,781억 원(27.0%), 지방소득세 993억 원(20.5%), 지방소비세 371억 원(14.1%) 등이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 자동차세 △325억 원(△6.9%), 등록면허세 △7억 원(△18.2%), 레저세 △6억원(△2.6%) 등은 감소 편성되었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지방세수입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3,832,141	100.0	3,316,709	100.0	515,432	15.5
보 통 세	3,339,035	87.1	2,846,138	85.8	492,897	17.3
취 득 세	1,779,419	46.4	1,401,299	42.3	378,120	27.0
등 록 면 허 세	3,224	0.1	3,939	0.1	△715	△18.2
주 민 세	18,600	0.5	18,140	0.5	460	2.5
자 동 차 세	437,796	11.4	470,329	14.2	△32,533	△6.9
레 저 세	20,994	0.6	21,558	0.7	△564	△2.6
담 배 소 비 세	194,690	5.1	183,021	5.5	11,669	6.4
지 방 소 비 세	300,160	7.8	263,027	7.9	37,133	14.1
지 방 소 득 세	584,152	15.2	484,825	14.6	99,327	20.5
목 적 세	463,306	12.1	441,971	13.3	21,335	4.8
지 역 자 원 시 설 세	94,704	2.5	88,843	2.7	5,861	6.6
지 방 교 육 세	368,602	9.6	353,128	10.6	15,474	4.4
지 난 년 도 수 입	29,800	0.8	28,600	0.9	1,200	4.2

○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 7,79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0%인 3,7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성비도 2017년 22.2%에서 2018년 27.1%로 4.9%p 증가하였음. 시는 이에 대해 '주택분양 호조 및 부동산 거래량의 완만한 상승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20]하고 있음.

- 우리 시의 부동산 거래량을 살펴보면, '16년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올해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10월까지 아파트 거래량도 64,0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가 증가하였음.

<최근 5개년 부동산 거래량 현황[2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10월	2017.10월
전 국	토 지	2,241,979	2,643,622	3,086,529	2,995,159	2,444,866	2,724,243
	아파트	876,465	1,071,295	1,225,864	1,134,747	924,892	1,063,415
	건 물	1,390,443	1,692,400	2,015,827	1,937,529	1,578,989	1,818,270
인 천	토 지	94,158	115,716	144,811	150,130	123,190	153,162
	아파트	48,244	60,455	70,935	65,922	54,963	64,073
	건 물	81,565	100,573	124,755	129,259	106,603	133,178

- 다만,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8.2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20)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3~4
'1. 2018년도 지방세 세목별 세입전망 및 추계근거(2017년도 대비)'

21)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통계자료(http://www.onnara.go.kr/)

강화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실제 올해 월별 부동산 거래량도 8월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

<2017년도 월별 부동산 거래량 현황[22]>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국	토 지	216,413	226,145	272,511	258,289	279,659	300,722	312,017	327,387	293,295	237,805
	아파트	74,852	74,768	93,876	93,756	107,308	120,558	130,161	146,281	122,921	98,934
	건 물	132,305	138,461	168,605	166,044	186,022	205,139	217,890	235,101	203,830	164,873
인 천	토 지	9,656	9,054	13,605	13,141	16,112	16,595	18,067	20,615	20,319	15,998
	아파트	3,294	3,575	5,845	5,337	6,384	6,188	6,760	10,341	8,883	7,466
	건 물	8,036	7,430	11,379	11,391	13,661	14,444	15,695	18,556	18,211	14,375

- 따라서, 취득세의 추계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량 상승 추세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 외에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23]할 수 있는 목적세임.

22)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통계자료(http://www.onnara.go.kr/)

23)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이 세목과 관련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및 천연가스(LNG) 인수기지는 분진·악취·대기오염·안전사고 우려 등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혐오시설이며 안전관리와 환경보호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화력발전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오염 냉각수 배출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고 환경보호·환경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세율로 kwh당 0.3원이 적용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LNG) 인수기지와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폐기물 매립시설 등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흥화력의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원전수준인 kwh당 1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관련 부처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임.

- 우리 시의 추가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대한 설득, 타당성 있는 여론 조성 등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우리 시의 **지방세 감면액**은 2014년 이후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지방세액이 올해보다 15.5%인 5,154억 원이 증가된 3조 8,321억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면액도 전년보다 142억 원이 증가한 2,874억 원으로 추계[24]하였음.

<최근 5년간 지방세 감면현황 및 2018년도 전망[25]>

(단위 : 백만원, %)

근거법규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추계		2018년 전망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계	381,788	100.0	332,526	100.0	302,394	100.0	273,193	100.0	287,410	100.0
조세특례제한법	58,634	15.3	17,249	5.2	10,254	3.4	4,089	1.5	4,311	1.5
감면조례	6,315	1.7	8,458	2.5	4,556	1.5	4,286	1.6	4,598	1.6
지방세법	62,489	16.4	66,532	20.0	74,518	24.6	71,000	26.0	74,727	26.0
지방세특례제한법	254,350	66.6	240,287	72.3	213,066	70.5	193,818	70.9	203,774	70.9

○ 2016년도 12월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이 종료되었음.

- 그동안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각각 부동산 취득세의 40%와 75%를 감면 받았었는데, 공항공사는 2000년 이후 1,614억 원, 항만공사

24) 지방세 감면액 추계액은 감면비율 7.5%를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 2018년 지방세 감면액 : (2018년 지방세 추계액) × (감면비율 7.5%) = 3,832,141백만원 × 7.5% = 287,410백만원

25)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7
'3. 최근 5년간 지방세 감면현황 및 2018년도 전망'

는 2005년 이후 1,123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음. 두 공사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시 재정부담액은 교부세 페널티를 포함하여 각각 555억 원과 17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폐지 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적 용 사안 별	실제부과 예상액	감면 예상액(A)	교부세 페널티(B)	재정부담 (A+B)
공항 공사	종전	취득세 40% 감면 유지시	42,928	28,619	26,930	55,549
	현행	감면종료	71,546	0	0	0
항만 공사	종전	취득세 75% 감면 유지시	3,050	9,150	8,610	17,760
	현행	감면종료	12,200	0	0	0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자료와 인천항만공사 회의자료를 활용하여 취득세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세감면액의 94.1%는 지방교부세 페널티 요인으로 작용함.

- 한편, 지방세 감면 종료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2017년 7월 17일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26]가 제정되었는데, 이는 인천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34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26)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2) 세외수입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보다 △3,559억 원이 감소한 2,286억 원으로 △60.9% 크게 감액 편성되었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외수입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228,586	100.0	584,496	100.0	△355,910	△60.9
경상적세외수입	83,754	36.6	75,476	12.9	8,278	11.0
재산임대수입	5,294	2.3	4,759	0.8	535	11.2
사용료수입	36,734	16.1	31,060	5.3	5,674	18.3
수수료수입	21,600	9.4	17,629	3.0	3,971	22.5
사업수입	8,647	3.8	11,108	1.9	△2,461	△22.2
징수교부금수입	3,640	1.6	3,683	0.6	△43	△1.2
이자수입	7,839	3.4	7,237	1.3	602	8.3
임시적세외수입	144,832	63.4	509,020	87.1	△364,188	△71.6
재산매각수입	80,620	35.3	406,731	69.6	△326,111	△80.2
부담금	41,568	18.2	74,274	12.7	△32,706	△44.0
과징금및과태료등	968	0.4	714	0.1	254	35.5
기타수입	21,049	9.2	26,414	4.5	△5,365	△20.3
지난연도수입	627	0.3	887	0.2	△260	△29.3

○ 세외수입의 가장 큰 감소 원인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 본예산 4,067억 원 대비 △3,261억 원(△80.2%) 크게 감액되었기 때문임. 시는 이에 대해 '시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을 3개년 매각평균수입에 따라 감액하고, 재정건전화에 따른 회계간 이관토지가 감소되어 시유재산 매각수입을 감액하였다.'고 설명[27]하고 있음.

- 2018년 예산안에도 ‘북항 배후부지 등 매각’으로 806억 원의 세입을 재산매각수입[28]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가 재정 위기로 힘들었던 지난 몇 년간 이 재산매각수입은 세외수입의 주요한 재원이었지만, 매각의 대상이 되는 시유재산은 유한한 자원이며 지속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므로 재산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은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최근 3개년 및 2018년 일반회계 재산매각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최종예산	결산(수납)	최종예산	결산(수납)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금 액	759,632	655,361	433,900	467,403	406,731	372,603	80,620

○ 그 외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예산서안 88p) 159억 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49.4%인 52억 원이 크게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7.9.1.시행)되어 장사시설 사용료 부과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료가 대폭 증가됨에 기인[29]함.

---

27)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17
‘6. 2018년도 세외수입 전년대비 20% 또는 1억원 이상 증감현황’

28)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재각매각수입 편성내역(예산서안 68~69p)
- 시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620백만원
- 시유재산 매각수입 80,000백만원

29)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22~23
‘6. 2018년도 세외수입 전년대비 20% 또는 1억원 이상 증감현황’

- **자원환경센터 폐기물(생활, 음식물) 반입 수수료**(예산서안 103p) 177억 2,583만 원은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12.8%, 20억 1,3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 수수료**(예산서안 103p) 21억 8,958만 원도 재활용 공정 중 발생되는 잔재물 처리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3억 5,458만 원 대비 18억 3,4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반면에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판매**(예산서안 103p) 2억 6,180만 원은 재활용품 선별품 판매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76.8%, △8억 6,47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예산서안 109p) 3억 3,172만 원은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등 로봇랜드 공익시설이 올해 6월 준공되고 7월에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017년 3회 추경 예산안에도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서안 106p) 1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3) 지방교부세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지방교부세는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1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당초 교부액 증가율 4.8%를 적용[30]하여 추계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 시는 2015년도부터 4,000억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교부 받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부세 실제 교부액은 5,163억 원에 이르고 있음.

- 2015년도 실제 교부액 4,307억 원은 전년도 실제 교부액 2,338억 원 대비 무려 84.2%인 1,969억 원이 증가된 것임.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예산편성액, 실제교부액 현황[31]>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편성액	2,650	2,650	2,923	4,300	4,850
실제교부액	2,309	2,338	4,307	4,195	5,163
증 감	△341	△312	1,384	△105	313

30)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43
'8. 2018년도 지방교부세 추계 근거'

31)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43
'8.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예산편성액, 실제교부액 현황'

4) 보 조 금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조금은 1조 8,311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5.5%, 2,4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의존재원임.

○ 국고보조금 지원은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복지규모의 확대,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하지만,

- 국비의 지원은 필연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비 확보시 지방비 부담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특히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비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보조금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1,831,070	100.0	1,585,302	100.0	245,768	15.5
국 고 보 조 금	1,620,366	88.5	1,364,062	86.0	256,304	18.8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2,955	6.2	130,827	8.3	△17,872	△13.7
기 금	97,749	5.3	90,413	5.7	7,336	8.1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1조 5,853억 원에서 18.8%인 2,563억 원이 증가[32]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 **소래구역우수저류시설설치**(예산서안 69p) 65억 4,800만 원은 전년대비 6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 140억 9,600만 원으로 국비가 70억 4,800만 원이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35억 2,400만 원임. 소래구역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올해 설계비를 반영하였고, 2018년에 공사비 및 감리비 등 잔여사업비 9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기준중위소득이 전년대비 1.16%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예산서안 77p)가 125억 원 증액됨. 또한 **장애인연금**(예산서안 78p) 43억 원, **발달재활서비스**(예산서안 78p) 1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예산서안 78p) 116억 원이 증액되었음.

- **방문건강관리사업**(예산서안 81p) 14억 3,676만 원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예산서안 81p) 24억 5,072만 원이 신규 편성됨.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서안 84p) 28억 원,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보조)**(예산서안 84p) 64억 원, **어린이집 확충(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서안 85p) 36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초연금 지급**(예산서안 88p) 829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노인사회활동지원)**(예산서안 88p) 56억 원이 증액되고, 임차

32)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139~192
'10. 2018년도 국고보조금 전년댑 20% 또는 1억원 이상 증감현황'

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지원**(예산서안 121p) 116억 원이 증액 편성됨. 아동수당 급여지급(예산서안 86p) 717억 원이 신규 편성됨.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사업 확대로 인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예산서안 102p) 352억 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7%, △178억 원 감소함.

-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가 23,238명이 증가하여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생활)(지역사회)**(예산서안 78p)가 22억 원 증액됨.

- 반면에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국토교통부)**(예산서안 122p)이 연차별 사업비를 반영하여 △32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예산서안 125p)도 △59억 원이 감액되었음.

○ 국고보조금등 중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인데, 2018년 예산액은 977억 원으로 전년대비 8.1%, 73억 원이 증가하였음.

-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에 따라, 10개소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예산서안 82p) 84억 4,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2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7%, △1,575억 원 감액되었음.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예산 18억 원 대비 1911.0%, 343억 원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내부거래는 전년 예산 대비 △58.4%, △1,918억 원 감소함.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172,724	100.0	330,226	100.0	△157,502	△47.7
보 전 수 입 등	36,114	20.9	1,796	0.5	34,318	1911.0
잉 여 금	35,649	20.6	1,369	0.4	34,280	2504.4
융 자 금 원 금 수 입	465	0.3	427	0.1	38	8.9
내 부 거 래	136,610	79.1	328,430	99.5	△191,820	△58.4
전 입 금	122,648	71.0	128,664	39.0	△6,016	△4.7
예 탁 금 및 예 수 금	13,962	8.1	199,766	60.5	△185,804	△93.0

○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보전수입등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3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 내부거래에서는 누리과정 운영(만3세-만5세)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53억 원, 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이 △1,853억 원 감소하였음.

다. 세 출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개 요

○ 2018년도 일반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조 4,511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328억 원(△5.1%) 감소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37.3%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8년도 일반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A)	2018년 (B)	증 감 (B-A)	증감률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332,050	2,583,921	2,451,122	△132,799	△5.1

※ 2016, 2017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이며, 금액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일부 끝자리 수의 합이 불일치 할 수 있음 - 이하 표 같음

<2018년도 일반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639,386	591,637	47,749	8.1	2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 지원비	19,721	30,000	△10,279	△34.3	224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800	2,550	△1,750	△68.6	225
시·군조정교부금	16,852	18,045	△1,193	△6.6	245
자치구조정교부금	657,154	557,455	99,699	17.9	245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27,600	0	27,600	신규	246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56,775	159,823	△103,048	△64.5	247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9,757	24,345	△14,588	△59.9	247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51,916	371,821	△319,905	△86.0	247
시세 징수교부금 지급	82,146	67,177	14,969	22.3	250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1,503	0	11,503	신규	251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9,822	750	9,072	1,209.6	268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2,880	4,200	△1,320	△31.4	277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5,788	0	5,788	신규	28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위탁금	15,979	1,403	14,576	1,038.9	301

나) 사업별 검토

□ **인천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예산서안 205p)

- 새로이 개발한 인천의 캐릭터 조형물을 시청 앞, 차이나타운, 송도 등 홍보에 적합한 2개소에 제작·설치하여 시정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홍보에 적합한 곳에 신규 인천캐릭터를 설치하여 새로운 캐릭턱의 인지도 제고 및 시에 대한 호감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 올해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인천 상징물 및 상징 조형물 디자인 개발과 활용' 용역이 진행 중임. 올해 말까지 상징물 디자인을 도출하고, 2018년 6월까지 캐릭터 이미지에 기반한 상징조형물 디자인

개발 예정임. 상징 조형물을 통한 시정홍보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교육경비제한 군구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예산서안 223p)

- 교육경비 보조제한[33] 기관인 동구와 옹진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로체험, 학력향상 및 창의인성개발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함.

- 동구와 옹진군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안전행정부, 2013. 7.) 개정으로 세입예산과목 편제가 개편[34]됨에 따라, 세외수입 규모가 축소되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여 교육경비 보조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되었음.

-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시 차원의 한시적인 지원 외에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3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34)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던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 등이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의 별도 과목으로 분류되었음.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 지원비(예산서안 224p)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35]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2013.1.17.)[36]에 따라, 2013년도에 인천대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원비 197억 2,100만 원을 편성함.

- 2016년도 예산안 시의회 심의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와 관련하여 향후 불합리한 협약 내용을 재협상 후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었음.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와 인천대는 재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로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천대학교 지원금 지원 현황[37]>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000	500	550	550	560	840
운영비	1,500	300	300	300	300	300
차입승인	1,500	200	250	250	260	540

3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연금 등)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3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2013.1.17.)**

1. 인천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인천대의 운영비를 보조한다.
2. 인천대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차입내역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 2013년 2017년까지 총 1,500억 원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대가 차입한 금액을 지원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비(단, BTL 제외)지원액의 1/2을 조정한다.
3.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인천대에 제공하되, 대학발전기금의 제공 시기 및 연도별 지원금액은 차입금 지원과 연계하여 조정한다.

37)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626
'25. 인천대학교 지원금 협정자료 및 지원현황'

□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예산서안 225p)

-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38]에 따라 기본재산(장학기금) 등으로 출연금 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 본예산 대비 17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3회 추경예산안 대비 27억 5,000만 원이 대폭 감액되었음.

- 이에 따라 향후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단 자체 장학 활성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재단 자체 기부금 수익 확충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천도시공사 출자금**(예산서안 246p)

- 도시공사경영개선을 위한 무수익자산 대체 현금 출자를 위해 27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지난 2011년 감사원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감사 時 기 출자된 도시공사 출자자산 중 무상사용, 반환조건 부여 출자 등의 무수익 자산에 대한 대체출자 지적에 따른 이행사항임.

-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61억 원과 276억 원을 출자하여, 2개년

38)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단의 사업수익금<개정 2013-1-4>
4. 이자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동안 현금 537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2017. 11. 2. 의회에 제출되었음.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는 261억 원을 반영하였음.

□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예산서안 251p)

- 2017년도 7월분부터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로 인한 자치구 세입 감소분을 주행세 징수액의 일부로 자치구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115억 334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합의권고 수용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자치구는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의 2002년도부터 2017년도 6월분까지의 자치구 재정부족분에 관한 보전청구를 포기하였음.

□ **시세 징수 포상금**(예산서안 254p)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과 시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액과 체납처분에 따른 격렬한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체납정리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은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체적인 지방세 징수율이 상승하

는 선순환 효과가 있음. 또한 연도별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포상금 지급액 및 체납액 징수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포상금 지급액	50	150	150	220
체납액 징수액	39,004	46,496	61,859	59,236

* 2017년 시세 체납액 징수액은 10월말 기준이며, 향후 2개월 징수실적을 감안하면 전년도 징수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6대 광역시별 지방세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인 천	50	150	150	220
부 산	850	650	650	650
대 구	300	300	300	300
광 주	290	290	290	290
대 전	110	110	110	110
울 산	120	120	120	120

□ **생존수영교육**(예산서안 261p)

- 시민들에게 수상사고 시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자,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간 5,000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

- ‘생존수영’은 긴급 상황 시 생명을 지키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수영법으로, 바다에서 구명장비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기초 수영법임. 지난 8월 인천 대청도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10대가 생존수영법으로 약 20분을 버티다 구조되는 등 여러 사례로 생존수영의 중요성이 증명되고 있음.

- 사업 대상은 생존수영을 배우고 싶은 인천시민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 받은 내용을 주변에 전파할 수 있는 학부모나 선생님과 같은 대상자를 일정 정도 선발하는 등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교육청에서는 2018년 예산안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0만 5,229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46억 3,100만원을 편성(교육부 보조사업[39]) 하였음. 교육청은 2016년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처음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로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방범용 CCTV 설치사업**(예산서안 263p)[40]

-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10억 원과 화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등 총 13억 원을 편성함. 우리 시에 설치된 CCTV 6,336대 중 1,348대

39) 보조율 : 교육부 50%, 시교육청 50%

40)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157~159

(21.3%)는 화질이 좋지 않은 100만 화소 미만에 해당되어 얼굴식별 및 차량번호 인식 등이 불가함.

〈방범용 CCTV 설치현황(2017.6월 기준)〉

(단위 : 대수)

구 분	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계	6,336	439	262	828	714	1,152	641	792	1,036	321	151
100만화소미만	1,348	114	26	348	196	238	0	55	340	31	0
200만화소미만	1,314	125	23	283	234	234	207	130	0	43	35
200만화소이상	3,674	200	213	197	284	680	434	607	696	247	116

- 각종 범죄 발생 및 사회 불안요인 증가로 CCTV 설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범죄 해결에 CCTV가 결정적 역할 수행하고 있음.

<범죄 예방·해결, 영상정보 자료제공 현황>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범 죄 해 결 (검 거)	1,312	137	304	374	497
범 죄 예 방 (실 시 간 대 응)	2,921	484	701	832	904
자료제공(검·경 등 유관기관)	21,797	4,523	5,079	5,986	6,209

-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

□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예산서안 268p)

- 지난 7. 23.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세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역류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여 2차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신규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2억 원임.

- 배수구, 씽크대, 화장실 등에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역류방지 옥내밸브를 설치하고 출입구, 지하계단 등 노면수 월류 취약지점에 물막이판 설치 사업으로 피해세대 5,448가구 중 수요조사에 따라 설치를 희망하는 2,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함.

- 실제 사업 시행 시에는 설치를 희망하는 피해세대가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고, 사유지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세대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 준수 등도 유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내실있는 사업 효과를 위해서는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예산서안 286p)

- 원활한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7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함. 신청사는 현 청사 운동장 북측 부지에 총사업비 956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7층, 연면적 46,000㎡ 규모로 2021년까지 건립될 계획임.

<신청사 건립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2021년 11월

▷ 사업위치 : 현청사 운동장 북측부지 내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17층, 연면적 46,000㎡

▷ 사 업 비 : 956억원 (추정가격)

- 현 청사에 대해서는 주차공간 부족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 주차 문제는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신청사 건립 시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직원 내부망(인투인 시스템)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음. 한편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신청사 건립 지원**으로 1,373억 원이 반영[41]되어 있지만, 사업위치가 현청사 부지로 확정되어 총사업비는 95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 지원 등**(예산서안 303p)

- 방학을 맞이한 우리시 거주 대학생 대상 행정기관 체험 및 예비적 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임. 전년보다 2억 5,027만 원이 증액된 7억 3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해주기 위해 선발 인원을 증원[42]하였음.

41)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인천광역시) p.185

42) ('17년) 450명 → ('18년) 500명

- 다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허드렛일로 시간 때우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43]되고 있는바, 근무하는 대학생에게도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고, 행정기관에게도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근무자 배치와 업무 지정에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임.

□ **국민운동단체 법적운영경비 지원**(예산서안 304p)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44]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4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46]에 따라, 국민운동단체의 범시민적 공익활동을 위한 법정운영경비 1억 427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시대에 따라 내용과 방법, 추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운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대체로 사전적 의미로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전개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강학상 의미로는 '사회적 또는 국가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선정하고 국민 대다수의 호응과 참여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적·체계적으로 전개하는 사회운동'

4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4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라고 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에서는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적재조사 측량 활용 무인항공기 도입**(예산서안 319p)

- 신기술 무인비행장치 드론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적재조사 및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특히, 무인비행장치 촬영으로 사람이 직접 측량하기 어려운 도서지역과 비행금지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고, 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드론 무인항공측량 촬영기법 및 시정 자원사업의 항측영상을 외부의 용역없이 자체적 사업 추진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가) 개 요

○ 2018년도 일반회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조 6,504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894억 원(17.2%)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40.4%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8년도 일반회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A)	2018년 (B)	증 감 (B-A)	증감률
문 화 복 지 위 원 회	2,106,968	2,261,014	2,650,413	389,399	17.2

<2018년도 일반회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생계급여	264,209	250,779	13,430	5.4	347
sos 복지안전벨트	1,500	3,000	△1,500	△50.0	34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6,950	13,682	3,268	23.9	352
인천복지재단 운영	1,810	0	1,810	신규	354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646	0	5,646	신규	35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전	2,299	0	2,299	신규	368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2,991	38,858	14,133	36.4	372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7,414	11,700	5,714	48.8	379
전몰군경유족수당 지원	810	0	810	신규	379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보훈예우수당 지원	2,052	0	2,052	신규	379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4,519	3,627	892	24.6	385
백령병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1,160	800	360	45.0	386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4,000	3,000	1,000	33.3	390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88,962	66,444	22,518	33.9	404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2,155	0	2,155	신규	411
치매안심돌봄센터 운영지원	2,183	0	2,183	신규	416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9,504	0	9,504	신규	416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2,189	0	2,189	신규	416
아이돌봄 지원사업	5,991	4,714	1,277	27.1	438
보육교직원 인건비	42,728	33,330	9,398	28.2	44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952	563	5,389	957.2	450
I-Mom 출산 축하 지원	11,800	1,913	9,887	516.8	452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	500	6,330	△5,830	△92.1	453
아동수당 급여지급	84,268	0	84,268	신규	461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지원)	2,331	5,042	△2,711	△53.8	471
기초연금	564,019	461,590	102,429	22.2	48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52,504	35,762	16,742	46.8	483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8,877	14,430	△5,553	△38.5	487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4,831	3,500	1,331	38.0	498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4,735	2,652	2,083	78.5	517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7,000	5,000	2,000	40.0	536

나) 사업별 검토

□ **생계급여**(예산서안 347p)

- 기준중위소득이 1.16% 인상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1~3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134억 원이 증액된 2,6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2,733억 원임.(국비 2,447억 원, 시비 195억 원, 군·구비 91억 원).

- 신규수급자 724명이 증가된 74,678명의 대상자에 대해 1.16% 인상된 월 305,000원을 적용하여 예산을 산출하였음.

- 동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대상자가 신청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수급대상자가 알지 못할 경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SOS 복지안전벨트(긴급복지)(예산서안 348p)

- 이 사업은 기존 제도권 하에서 지원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어려운 위기에 처한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었음.

- 2006년 도입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 복지안전망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긴급한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생계·의료·주거·해산·장제·교육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선(先)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후(後)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 또한 국고보조사업[47]으로 올해에는 최종예산 기준 국비 84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9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안에도 올해 최종예산과 같은 9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긴급복지 지원과 SOS 복지안전벨트 비교>

구 분		긴급복지 지원(제도권)	SOS 복지안전벨트(인천형)
지원기준	소 득	중위소득 75% 이하	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13,500만원 이하	1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지 원 실 적		12,975가구 / 7,862,68천원	2,197가구 / 1,700,059천원

* 지원실적은 2017년 10월말 기준임.

47) 보조율 : 국 80%, 시 10%, 군·구 10%

- SOS 복지안전벨트는 기존 긴급복지지원보다 확대된 긴급복지지원이며, 더 많은 위기가정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있음.

- 다만 올해 당초에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0월말 현재 집행률 56.7%, 집행액 17억 5만 9,000원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높지 않으며, 2018년 예산안은 1,500가구를 대상으로 전년 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음.

- 이에 대하여는 2018년도 군구별 지원대상 파악 결과에 따라 대상가구가 1,500가구로 감소[48]되었다고 하지만, 예측과 실제 집행사이의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48)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174

□ **인천복지재단 운영**(예산서안 354p)[49]

- 인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기본재산 1억원과 운영비 17억 1,024만 원을 편성하였음. 재단의 기본재산은 3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5개년에 나누어 출연할 예정임.

- 시는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단체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 및 컨설팅 등을 위해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음.

- 10여 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민간기관과의 역할 및 기능 중복과 절차적 문제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대에 부딪쳐 왔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관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재단 설립은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민관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귀담아 듣는 등 충분한 시민적 합의를 갖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민단체의 반대에 대한 내실있는 대안 강구와 같이 인천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천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할 것임.

---

49)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282~283

□ **장애인연금**(예산서안 360p)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급여(18~64세) 및 부가급여(18세 이상)를 지원하는 사업임.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2018. 4월부터 기초급여가 206,050원에서 25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52억 원 증액된 404억 원(국비 333억 원, 시비 71억 원)[50]으로 편성하였음. 한편, 정부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51]이라고 하고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예산서안 372p)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만6세부터 65세 미만의 1급~3급 장애인(활동지원은 1~4등급)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도 ('17년) 9,240원 → ('18년) 10,760원으로 16.5%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1억 원이 증액된 530억 원(국비 436억 원, 시비 94억 원)으로 편성됨.

---

50) 장애인연금 보조율 :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51) 제352회 국회(임시국회) 폐회중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2017. 8. 16.) p.6

□ **보훈 유공자 예우**(예산서안 379p) 20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지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례의 제·개정이 있었으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7. 11. 13.)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52]되고,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7.11.13.)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월 3만 원**이 신설[53]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7. 11. 13.)에 따라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5만 원**이 신설[54]되었음.

---

52)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53)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보훈예우수당)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4)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3.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수당 등)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5만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예산서안 379p)이 전년 대비 57억 원이 증액된 174억 원으로 편성되고, **전몰군경유족수당 지원**(예산서안 379p) 20억 5,000만 원과 **보훈예우수당 지원**(예산서안 379p) 8억 1,000만 원이 신설되었으며,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보훈유공자 예우 수당 예산 증가액은 85억 7,640만 원에 이르고 있음.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예산서안 390p)

- 올해 기존 헬기(EC-135)를 대신하여 중형헬기(AW-169)를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도입함에 따라, 탑승 인원이 증가하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여 응급환자 이송 건수가 대폭 증가함.

<연도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실적>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30	146	113	129	149	137	169

※ 2017년은 10월말 기준임.

- 중형 헬기 도입에 따른 유류비 증가와 백령, 대청, 소청지역까지 헬기운항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를 올해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으로 편성함.

- 대부분의 도서지역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시의 특성상 응급의료 헬기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적정한 예산 확보를 통해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이 필요함.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예산서안 413p)

- 정신질환의 상담, 치료, 예방을 위해 각 군·구 기초정신건강센터 10개소 운영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전년보다 10억 5,960만원이 증액된 22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구비 7억 3,75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임.

-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35명 추가 채용을 포함한 75명에 대한 인건비가 25억 5,000만 원이고, 10개소 센터 운영비가 4억 원임. 다만, 인력채용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번	구분	위탁기관	개소년도	종사자	관리인원	사업비	증원
계				98	2,553	2,950,000	35
1	중 구	인하대학교병원	1999. 7	10	167	312,000	4
2	동 구	고정선정신건강의학과	2009. 5	9	212	278,000	3
3	남 구	인천성모병원	2001. 7	12	348	346,000	5
4	연수구	인천의료원	2005. 7	11	291	312,000	4
5	남동구	영화병원	2008. 6	11	319	312,000	4
6	부평구	글로리병원	2004. 7	9	219	244,000	2
7	부평구(삼산)	글로리병원	2017. 9	6	165	244,000	2
8	계양구	차지현정신건강의학과	2008. 9	10	352	312,000	4
9	서 구	인천참사랑의원	2005. 4	12	255	346,000	5
10	강화군	김포한누리병원	2001. 1	8	225	244,000	2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현황(98명)
-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본 인력 : 75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인력 : 9명(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로 인건비 지원)
- 자살예방사업 인력 : 14명(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인건비 지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예산서안 416p)[55]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8일 개인의 책임이었던 치매를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감소 및 치매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도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10개 군·구 치매안심센터 10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95억 400만 원이 편성됨.(국비 8,448백만원, 시비 1,056백만원)

- 치매는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에 가까워 발병 이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또 치매증세의 초기 발견 시엔 증상 개선이 가능해 약 30%의 유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함.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우리 시에 추가 설립을 하고 있는 동구와 강화군 등 5곳의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가장 시급을 요하는 시설이므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의 집중이 필요함.

---

55)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279~281

□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서안 442p), **아동수당 급여지급**(예산서안 461p)

- **아동수당**은 만 0~5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반면에, **양육수당**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만 지급되는 제도로써 차이가 있음. **양육수당**은 무상보육제도를 보충하는 제도로써 무상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 금전적 혜택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국비 727억 원을 포함[56]하여 89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아동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30억 원이 감액되었음. **아동수당 급여지급**은 국비 717억 원을 포함[57]하여 201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84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2019년 이후부터는 매년 1,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비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아동수당 급여지급**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국비 이외에 각각 170억 원과 126억 원의 시비 부담이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는 아동수당 급여지급의 시비 부담액은 250억 원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

56) 보조율 : (자치구)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 (강화,옹진) 국비 65%, 시비 17.5%, 군비 17.5%

57) 보조율 : (자치구) 국비 80%, 시비 14%, 구비 6% / (강화,옹진)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예산서안 446p)

- 이 사업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급·간식 서비스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사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42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203억 7,000만원 임.(시비 70%, 군·구비 30%)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공동구매를 활용한 검증된 급·간식 재료 공급으로 건강 급식을 실시하고, 부모에게는 청정급식으로 인상된 금액[58]을 포함한 급·간식비 지원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어린이집에는 공동구매를 통한 급·간식 재료를 문 앞까지 배송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급식단가 인상 차액분을 운영비로 지원함으로써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지원내용은 만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월평균 6만 6,000원 중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 3만 8,000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정한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인 1,745원, 월 3만 8,000원에 해당함.(급식단가 인상 차액분 만 0~2세 1일 455원, 만 3~5세 1일 655원도 전액 지원함.)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내용>

구 분	산 출 내 역		비 고
계		20,370백만원	
부모부담 보육료 중 급·간식비 지원	24,714명×1,745원×22일×12월	11,386백만원	3~5세
급식단가 인상 차액분	39,215명×455원×22일×12월 24,714명×655원×22일×12월	4,710백만원 4,274백만원	0~2세 3~5세

58) 청정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 단가
- 0~2세 : 1,745원 → 2,200원(455원)/일/인
- 3~5세 : 1,745원 → 2,400원(655원)/일/인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서안 450p)

-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별 균형있게 배치하여 취약보육 등 지역거점형 어린이집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59억 5,180만 원을 편성(국비 3,967,864백만원, 시비 1,983,932백만원)하여 전년 본예산보다 53억 8,930만원이 증액되었고, 2회 추경예산 대비 46억 7,352만 원이 증액되었음.

<국공립어린이집 연차별 확충계획>

연 도 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설확충 (누계) 이 용 율	15개소 (165) 11.7%	⇨ 30개소 (195) 13.8%	⇨ 30개소 (225) 15.9%	⇨ 35개소 (260) 18.4%	⇨ 40개소 (300) 21.2%
정 원	969명	1,721명	1,740명	2,030명	2,320명
소요예산	36억원	109억원	136억원	146억원	156억원

※ 1. 복지부 확충계획 및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탄력적 반영
2. 소요예산(기자재비 포함) : 국비50%, 지방비50%(시비50, 군·구비50)

- 동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축, 매입, 장기임차, 공동주택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축 2개소, 매입 4개소, 장기임차[59] 1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및 공공기관설치 23개소 등 총 3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59)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리모델링비 및 근저당설정비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군·구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수	119	12	5	8	6	15
누 계		131	136	144	150	165

□ 출산 장려 지원사업[60]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I-Mom 출산 축하 지원**(예산서안 452p)외에 **I-Mom 건강관리지원** 등 24개 사업(예산서안 451~456p)이 있음. 2018년 예산은 전년보다 65억 1,461만 원이 증가된 216억 9,424만 원을 편성하였음.(국비 6,128,643백만 원, 시비 15,565,595백만 원)

60)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284~287

<I-Mom 출산축하 지원 확대>

2017년		2018년
I-Mom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대상 : '17년 출생아 전원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15만원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초과~85%이하 출산가정 12개월 미만 영아 지원내용 : 기저귀 등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84천원	I-Mom 출산축하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18년 출생아 전원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50만원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로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임. 우리 시 합계 출산율도 1.14로 이미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속·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연도별 합계출산율〉

연 도 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출산율	1.25	1.19	1.15	1.23	1.24	1.30	1.19	1.21	1.24	1.17

〈시·도별 합계출산율〉

지 역 별	전국	인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2015년	1.23	1.22	1.00	1.14	1.22	1.28
2016년	1.17	1.14	0.94	1.10	1.19	1.19

- 「출산 축하금」의 내실있는 사업추진 필요

· 2011년 1월부터「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첫째자녀 100만 원, 둘째자녀 200만 원, 셋째이후 자녀 300만 원을 규정하였으나, 2015년에는 축소하여 셋째아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음. 2016년도부터는 재정건전화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중단하였고, 2017년에는 인천형 복지모델사업 중 출산정책 효율화를 위해 출산용품 모바일상품권(15만 원)을 지원하는 I-Mom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도부터는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全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 118억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함. 출산축하금이 출산율의 변화에 미칠 영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출산장려금과 출산율 간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져야 할 것임.

-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마련 필요

· 지난 3년간 저출산 예산은 2016년 101억 원, 2017년 151억 원, 2018년 217억 원으로 2017년도 대비 60%, 65억 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저출산 대응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이 예상되기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예산서안 480p)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초연금이 2018년도 4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61]임.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사업비는 전년보다 1,024억 이 증가한 5,640억 원으로 편성됨(국비 4,564억 원, 시비 1,076억 원).

-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수급범위의 확대에 따라 대상이 증가하고, 단계적인 연금액의 인상으로 기초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비의 지원은 필연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 사업도 국비가 전년보다 829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시비 부담액도 전년보다 195억 원이 증가하였음.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원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급이원(명)	202,241	211,821	220,904	224,357	238,735

<연도별 기초연금 예산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억원)	2,901	4,302	4,471	4,616	5,640
증감액(억원)		1,401	169	145	1,024
증 감 률 (%)		48.3	3.9	3.2	22.2

※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임.

61) 제352회 국회(임시국회) 폐회중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2017. 8. 16.) p.8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예산서안 495p)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 등의 혜택 지원비로 전년 대비 1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9억 8,900만 원이 편성됨.(기금 4,808백만원, 시비 2,181백만원)

- 통합문화이용카드의 연도별 발급액 대비 이용률을 보면 70~8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예산액 대비 이용률은 이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예 산 (A)	발급액 (B)	발급률 (A/B)	카드승인 (C)	이용률 (B/C)	비고
2014년	3,077,850	3,046,200	99.0	2,482,528	81.5	
2015년	4,619,800	4,037,500	87.4	3,062,259	75.8	
2016년	4,298,000	4,169,950	97.1	3,614,365	86.7	
2017년	5,674,000	5,097,000	89.8	3,591,000	70.5	

□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및 지원**(예산서안 497p),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예산서안 500p)

-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의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하는 문화트렌드 변화에 따라 생활기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동아리 육성을 위해

6억 원, 일상생활권에서 시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8억 원을 신규 편성함.

-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 조례 제7조[62]에 따라 인천생활문화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천개의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연습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발표의 장 등의 지원함으로써 현재 350개의 생활문화 동아리를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2018년에는 500개의 생활문화 동아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현재 422개의 문화공간을 2018년에는 550개, 2022년 1,000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향후계획[63]으로 2018년 1월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 '작은 문화공간 지원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음. 문화주권 2단계 사업 및 시민행복 대표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 수립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신규사업은 전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 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임.

---

62)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 조례 제7조(설치) 시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251

□ **공기부양정 운영**(예산서안 525p)

- 2017년도 6월 제4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중 섬 관광 활성화 및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올해 추경에 20억 1,285만 원을 편성하여 공기부양정 5대[64]를 구입하고 접안시설(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공기부양정이 10인승 이하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없고, 높은 파도에 운항이 어려워 관광여객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공기부양정에 대한 필요성과 안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편성액 전액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음.

- 2018년도 예산안 1억 3,149만 원은 내년도에 공기부양정이 도입되어 운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2018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공기부양정 1대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였음.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은 안전성과 수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한 뒤에 시행되어야 할 것임.

64) 6인승 2대, 10인승 3대

□ MICE[65]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예산서안 533p)

-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국제회의, 포상관광 등 마이스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MICE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1.7%,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임.

- 연도별 MICE 유치 현황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우리 시 MICE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의 내년 7월 준공으로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연도별 MICE 유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컨벤션	기업회의·인센티브	전시·박람회	이벤트 등	비고
2014	12	12	0	0	0	
2015	55	45	5	3	2	
2016	96	75	11	3	7	
2017	142	108	20	3	11	

65)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나 포상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한다.

□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예산서안 536p)

- 인천유나인천유나이티드 프로선수단 및 유소년 선수단 운영, 축구저변 확대 및 홍보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공격력 강화를 위한 선수 보강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자문단 운영, 인천연고 선수 육성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을 편성함.

<인천유나이티드FC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액	3,000	2,500	2,900	7,500	7,500	9,500

※ '16년～'18년 지원액에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25억원이 포함되었음.

- 주식회사인 인천유나이티드FC에 대한 연도별 지원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집행내역에 대한 의회의 감시 권한이 없는 만큼 경영의 투명성과 특단의 자구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가) 개 요

○ 2018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5,631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99억 원(5.6%)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8.6%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8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A)	2018년 (B)	증 감 (B-A)	증감률
산 업 경 제 위 원 회	448,558	533,194	563,132	29,938	5.6

<2018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496	0	1,496	신규	68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9,146	23,960	35,186	146.9	684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830	185	1,645	889.2	694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00	200	1,800	900.0	695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520	800	1,720	215.0	695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364	7,143	△2,779	△38.9	700
온수 하수관거 정비공사	784	1,960	△1,176	△60.0	701
진두 하수관거 정비공사	172	1,556	△1,384	△88.9	701
내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361	1,664	△1,303	△78.3	701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	1,630	3,100	△1,470	△47.4	703
상방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102	607	6,495	1,070.0	704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4,326	8,240	△3,914	△47.5	706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5,000	0	5,000	신규	707
지자체 도시숲 조성	1,635	135	1,500	1,111.1	723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600	0	1,600	신규	72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000	0	2,000	신규	727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추진	3,045	0	3,045	신규	732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1,200	0	1,200	신규	738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2,640	1,000	1,640	164.0	738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1,100	0	1,100	신규	738
로봇랜드 공익시설 운영지원	2,935	425	2,510	590.6	750
서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940	2,260	△1,320	△58.4	758
민간분야 전기자동차 보급(547대)	9,846	7,428	2,418	32.6	770
전기버스 구매(10대)	1,000	0	1,000	신규	77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80	1,800	△1,620	△90.0	785
새시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600	0	1,600	신규	788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공사	4,000	0	4,000	신규	821

나) 사업별 검토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66] 보급사업**(예산서안 681p)

- 2017년도부터 신규 추진한 사업이며,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수도권 NOx(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됨.(국비 184백만 원, 92백만 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예산서안 684p)[67]

-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및 조기 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통하여 운행차 배출가스를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도심 대기질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임.

-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줄인다는 국정과제 목표 이행사업 중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수송 부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사업 확대로 인하여, 전년 대비 352억 원이 증액된 591억 원으로 편성됨.(국비 29,573백만 원, 시비 29,573백만 원)

---

66) 보일러에서 연소하는 불꽃에 작은 보조 불꽃을 붙여, 새는 가스를 잡아 효율을 높여주는 보일러. 완전 연소를 실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이 감소되며, 가스 소모를 줄여 경제적임.

67)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411~412

- 인천시의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 증가

· 인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9.2%로 가장 많은 증가율은 보였으며 지난해인 2016년에는 6.06% 증가하였음.

· 2016년 전체 등록차량 중 휘발유 차량은 44.8% 643,403대, 경유차는 42.9% 617,495대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경유차는 '13~'15년 사이 10%대 이상으로 급증하였음.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 수	895,818	925,711	983,508	1,049,444	1,142,351	1,247,485	1,355,207	1,437,373
증감률		3.34	6.24	6.70	8.85	9.20	8.63	6.06

- 사업기반 마련을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강화

· 우리 시는 2016. 5월「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의무화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및 정비 권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음.

· 특히 '2017년 자동차 공해관리 종합계획(2017.1월)'을 수립하여 운행자동차의 저공해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중점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19년까지의 사업목표 대비 사업추진 관리 필요**

  · 인천시는 2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목표량을 74,000대로 잡았으나 2017년말 현재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량이 24,702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당초 남은 목표인 49,298대에 대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 까지 연간 24,649대의 사업을 추진해야하나, 그간 연평균 8,234대의 저감사업을 진행해 온 상황에서 목표량 달성은 불투명함

-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 필요**

  · 본 사업은 국비, 시비 각각 50% 매칭사업으로 2018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 등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예산서안 700p)

- 가뭄에 따른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대청도 지역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및 강화·옹진 지역 식수원 개발을 통해 안정정인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임. 국비 확보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27억 7,900만 원이 감액된 4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강수량 부족, 군인 등 인구증가로 인한 사용량 급증, 관광객 증가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강수량이 6월에서 9월까지의 장마와 태풍시즌에 집중돼 계절적인 편차가 심하고 하천발달이 미약하며 물이 쉽게 빠지거나 저장이 되지 않는 지질조건, 지형특성 등으로 인한 것임.

- 따라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식수원 다원화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 설비 등을 적극 도입해 도서지역의 만성적인 식수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예산서안 727p)

- 최근 1년 이내에 직원 감소 없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16억 원과 20억 원을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음.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금(인상분의 55%) 이외의 인상분(45%)에 대해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 환경 개선을 통한 폐업위기의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임.

□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추진**(예산서안 732p)

-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노인과 경력단절 여성 인력을 활용하여 249개 초등학교에 525명의 하교지도 인원을 배치하여 하굣길 안전 확보와 불안감을 해소하며,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추경예산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사업기간이 연장(4개월→9개월)되고, 최저임금 시간당 단가가 상승('17년 : 6,470원 → '18년 : 7,530원)함에 따라, 전년 최종예산 대비 14억 5,237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30억 4,546만 원이 편성되었음.

- 하지만, 하굣길 길동무에 대한 매뉴얼 숙지와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이 사업에 대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인천 뿌리산업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평생일자리 창출사업**(예산서안 732p)

- 이 사업은 5년간 108억 원을 들여 뿌리산업의 신규 채용자와 재직자,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종합 대책'이며, 2018년에는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남구 제물포스마트타운(JST)에 일자리 매칭과 뿌리산업 기술 습득 지원, 일자리 지원시책을 수행하는 '인천 뿌리산업 지원센터'를 두고, 센터와 약정을 맺은 기업의 신규 취업자에 1년간 매달 15만~30만 원의 '경력형성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임.('18년 10개사 300명 지원, 5년간 100개사 2,500명 지원 계획)

-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없던 사업을 도입하고, 다년의 사업기간과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장애 요소의 제거와 집행 차질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68]

- 청년층은 전체 연령대에서 15세~29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69]하며, 2017년 10월 기준으로 우리 시 청년층 인구는 57만 7,280명으로 전체 인구 294만 8,098명(외국인 61,551명 제외) 중 19.6%를 차지하고 있음[70].

-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에산서안 738p)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 관내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중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인턴급여 지원, 2회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등

68)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416~418
69) 다만, 정부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대상을 15세~34세로 보고 있음.
7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한 정규직 근속 유도 사업이며,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지원금의 상향조정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또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 2018년에 채용 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연봉 3,000만 원 미만의 청년에게 복지비를 지원하는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예산서안 738p) 12억 원과, 청년 고용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예산서안 738p) 11억 원이 이 신규 편성되었음.

- **우리 시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실태**

  · 통계청이 2017년 10월에 공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 시는 7대 특·광역시의 평균 고용률[71] 64.7%과 실업률[72] 3.8%를 웃도는 고용률 66.6%과 실업률 4.6%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

  ·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 돌파로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노동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나, 고령인구의 증가 및 외부 고용환경의 다변화 그리고 전국 대비 상용근로자의 높은 근로시간과 낮은 급여 수준으로 열악한 일자리 여건을 보이고 있음.

---

71)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72)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책 추진 필요**

· 인천시의 2016년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결과에 따르면 인력을 필요로 하고 인턴십 매칭이 성립된 분야는 제조업이 76.4%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산업별 총생산액 비중 및 종사자 비율 역시 7대 특·광역시 대비 타 산업에 비해 제조업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타 지역보다 제조업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2016년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희망하는 직무분야는 사무분야와 생산직 분야가 탁월하게 많았으며, 건설·유통분야의 경우 매칭률 이 낮게 나타났음.

· 이에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고용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중소 제조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수 인력과의 매칭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인턴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지원해 주는 기업지원[73]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73) 기업지원금 : (정규직 전환지원금/시비) 1인당 200만원 , (채용유지 지원금/국비) 1인당 200만원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예산서안 784p)[74]

- 현재의 노후화되고 협소하며 교통혼잡 등의 열악한 유통환경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하여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인근지역인 남촌동으로 이전하여 현대화 된 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173,18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관리사무동, 판매 및 전문 물류동 등으로 구성하여 건립될 계획이며, 2018년 사업비는 506억 3,100만 원을 반영함.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황〉

구 분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시기	1994년 개장	2019년 준공 이전
위 치	구월동 1446, 1446-2번지	남촌동 177-1번지 일원
부지(연면적)	60,872㎡(44,101㎡)	173,188㎡(131,276.03㎡)

- **현 부지의 매각과 이전사업의 동시 추진**

· 인천시는 현재의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건립 기본계획을 2014년 11월에 공식 고시하고, 2015년 2월에는 롯데인천타운과 현 시장 부지를 3,060억 원에 매각하는 수의계약[75]을 체결하였으며, 매각대금[76]을 사업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7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422~423

75) 수의계약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76) 매각금액(3,060억 원) : 부지 2,921억 원, 건물 139억 원 (감정평가액 3,056억 원)

· 롯데인천타운은 시장 이전 기한인 2019년 5월에 잔금 1,240억 원을 정산하게 되어 있으며, 시는 시장이전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신규 부지의 원만하지 않은 보상협의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 진행**

· 인천시는 2017. 9월 현재 신규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진도율 75%로 일부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공사 착공시기가 우려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진행하고 있음.

· 잔금수령 기한인 2019.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연내 공사착공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난 9월에 1차 토지수용 재결 결정으로 보상금 공탁을 완료함으로서 시의 부지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동월 공사계약 업체(건축, 토목, 기계분야)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함.

- **적기의 공사착공을 위한 조기추진 필요**

· 인천시는 기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와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의 조기 추진으로 연내 공사착공 노력 필요

·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한 예상상황 대비 등 원활한 사업추진 노력 필요

4)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가) 개 요

○ 2018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8,864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44억 원(△2.7%) 감소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3.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8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A)	2018년 (B)	증 감 (B-A)	증감률
건 설 교 통 위 원 회	958,312	910,811	886,407	△24,404	△2.7

<2018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주거급여지원	81,487	69,894	11,593	16.6	882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6,000	9,759	△3,759	△38.5	891
황청~인화간 도로개설(4-1공구)	3,000	0	3,000	신규	891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1,800	0	1,800	신규	892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260	0	260	신규	893
계양구 효성동 경남아파트일원 도로개설(소1-3호선)	1,400	0	1,400	신규	893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유지관리비)	2,230	400	1,830	457.5	902
준공영제 재정지원	89,277	55,591	33,686	60.6	909
버스유류대보조금(CNG, 경유)	10,060	3,293	6,767	205.5	910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전기 저상버스 구입보조(시범사업)	1,495	0	1,495	신규	910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22,000	27,000	△5,000	△18.5	918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5,759	3,503	2,256	64.4	918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콜비)	1,600	2,400	△800	△33.3	918
택시 IC카드단말기 교체 지원	2,224	0	2,224	신규	9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113,502	115,200	△1,698	△1.5	919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	4,425	2,125	2,300	108.2	919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지원	3,434	0	3,434	신규	927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5,026	3,800	1,226	32.3	932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	100	0	100	신규	932
명절(설,추석) 여객선 운임 보조	1,620	0	1,620	신규	932
출향민 여객선 운임 보조	300	0	300	신규	932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임 보조	250	0	250	신규	932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441	0	1,441	신규	936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28,202	35,077	△6,875	△19.6	936
수산물안전성분석 장비 구입	2,000	0	2,000	신규	971

나) 사업별 검토

□ **주거급여지원**(예산서안 882p)

- 소득요건(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개보수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임.

- 기준중위소득이 1.16% 인상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1~3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증가로 인하여 전년예산 대비 115억 9,308만 원이 증액되었음.

- 동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대상자가 신청하여 주거급여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수급대상자가 알지 못할 경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실제 월 임대료에 비해 법적 주거급여 지급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기준임대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지역별 임차료 수준과 주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함[77].

□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예산서안 892p)

- 남동구 논현동 일원 청능대로삼거리~소래대교~소래대교삼거리 구간 1,480m 도로확장공사 사업임. 총사업비 255억 원으로, 2018년도 소요사업비 공사비 13억 원과 감리비 5억 원을 반영함.

- 2017년도 예산 75억 원(이월 72억 원, 1회 추경 3억 원) 중 집행액이 3억 원에 불과함. 소래어촌계 소유 지장물 등 이설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78]하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예산서안 893p)

- 인천 구간 2.5㎞는 2011년도 7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하였으나, 잔여 인천 일부구간 및 김포시 구간이 미 확장(현재 2차로 이용)되어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최근에는 검단 산업단지, 학운 산업단지 등 주변개발에 따른 급속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 지정체가 심각하여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임.

- 우리시에서는 강화 진입 주축도로망 확충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예산문제 등

77)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535~537

78)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448

김포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2017년도 3월 국토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후 김포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이 지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음.

- 동의안에 따르면, 사업비 466억 원에서 국비 200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 금액 중 김포시는 100억 원을 정액 부담하고, 인천시는 김포시 부담금 100억 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166억 원을 부담함.

- 이 사업으로 지·정체 해소와 통행시간 감소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주변 관광지 접근성 향상 등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원활히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른 철저한 사업 관리와 추진이 필요함.

□ **준공영제 재정지원**(예산서안 909p)[79]

- 200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는 현재 32개사, 156개 노선, 1,861대가 참여하고 있음. 인건비 및 물가상승과 지하철2호선, 수인선 개통, 노선개편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수입금 감소로 인한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7억 원이 증가된 893억 원이 편성됨.

79)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544~546

<연도별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288,694	43,323	56,916	71,788	57,129	59,538	

-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시민 서비스 강화 필요**

  · 시내버스의 주 이용대상자가 노인, 학생, 생활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임에 따라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통복지차원에서 준공영제가 운영되어야 하고

  · 준공영제 운영으로 버스회사가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폐쇄하는 것이 불가하고, 운전기사의 임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었음.

  · 시민 만족도 조사(2014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에 따르면 운송업체의 운송원가 보상으로 원가절감 노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현상 발생, 운전기사의 불친절, 운행횟수 감소와 배차간격이 늘어났다는 불만사항도 조사되고 있는바

  · 운수업체의 경영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영평가 실시(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및 운전기사에 대한 친절교육 등으로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향상 필요

- **표준운송원가 정산방식 개선 필요**

·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원칙은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단가(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여 비용과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운행비용은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업체마다 다양한 원가항목의 평균값(중위 60%)을 표준단가와 운행실적으로 정산함.

· 인천발전연구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행비용은 인건비, 연료비, 일반관리비, 적정이윤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시의 운행실적 산정방식은 연료비 원가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운행대수[80]에 따라 정산하고 있어 운행대수의 증차를 위한 운행횟수 단축이라는 대 시민 서비스 개선과 역행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발생시키고 있고

· 적정수준의 운행횟수, 배차간격으로 조정하여 시민편의 버스서비스의 공급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고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실적 산정방식은 운전자의 근로강도(대당운행거리)와 차량운행비용(타이어비, 차량정비비 등)가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80) 운행대수=〔(총 운행거리/1회당 운행거리)/대당 운행횟수〕

·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정산체계 적용방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원가 항목을 차량비용(업체규모와 운행거리에 정비례하는 원가) 운행비용(운행거리에 정비례하는 원가) 운영비용(경영여건개선을 유도하는 원가) 등 3가지 정산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준공영제 재정지원액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 지하철개통에 따른 버스이용객 감소로 인한 수입금 감소와 운수종사자 인원증가 및 인건비 인상, 유류비 인상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되고 있음

· 시내버스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2014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확보금액이 지급소요액 미달상황 발생하고 있고 2010년부터 재정지원 부족분을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우선 대출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다음연도에 대출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 결과 미지급 누계액이 채무에서 누락되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함에 따라

· 준공영제 재정지원액은 필수적인 경비로 세출예산에 우선계상 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방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편성 시 지급소요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택시 지원 사업

<2018년도 택시 관련 주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7 예산액	2018 예산안	증 감	비 고
계		6,053	11,099	5,046	
신규사업		0	3,589	3,589	
1	택시 IC카드 단말기 교체		2,224	2,224	개인 4,737대(기교체 4,256대) 법인 5,385대
2	법인택시 블랙박스 설치		808	808	5,385대
3	영종거주 개인택시 통행료 100% 지원		78	78	58대
4	옹진군 취약지역 100원 택시 운영		160	160	
5	개인택시 종사자 해외연수		69	69	45명
6	개인택시 도시브랜드 교체		30	30	6,300대
7	공무원 출장시 택시 이용		100	100	
8	인천형 택시발전 및 중장기 추진과제 수립 용역		120	120	
기존사업		6,053	7,510	1,457	
9	법인택시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150	150	0	
10	개인·법인택시 카드이용 수수료 지원	4,303	5,760	1,457	수수료 상향 지원(50→80%)
11	택시 콜비 지원	1,600	1,600	0	

- 시는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업계 지원 예산으로 전년보다 51억 원이 증액된 111억 원을 편성[81]하였음. **택시 IC카드단말기 교체 지원**(예산서안 918p) 22억 2,335만 원, **법인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예산서안 918p) 8억 800만 원 등 8개 신규사업으로 36억 원을 편성하고,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8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인천광역시.) p.35

(예산서안 918p) 57억 5,900만 원 등 3개의 기존 사업은 전년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75억 원으로 편성함.

- **택시 IC카드단말기 교체 지원**(예산서안 918p) 22억 2,335만 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2018년도 7월 20일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IC카드단말기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개인택시 중 기교체한 4,256대를 제외한 4,737대에 각 24만 2,000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5,385대에는 각 20만 원을 지원함.

-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예산서안 918p) 57억 5,900만 원은 택시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서, 2017년도 7월부터 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됨에 따라 전년예산 대비 2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콜비)**(예산서안 918p) 16억 원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담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 및 질 높은 시민 콜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기준이 월/대당 30콜 이상 2만 원, 40콜 이상 2.5만 원, 50콜 3만 원, 51콜 이상은 1콜 당 400 원을 추가하여 최대 5만원을 지원하고 대상은 인천지역 가맹사업 택시 8,061대임. 다만, 2015년도 카카오택시 출범에 따라 지속적으로 콜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2017년도 2회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을 감액하여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올해 최종예산과 같은 16억 원을 편성하였음.

- 한편,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예산서안 918p)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을 운송사업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이며, 2017년도 집행잔액 69억 5,000만 원 명시이월에 따라 △50억 원을 감액 편성되었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예산서안 919p)

-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위해 2001년도 7월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재원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고, 지급단가는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임.

-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산편성 내역은 매년 소폭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18년도에는 전년 본예산보다 △1.5%, △16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13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연도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 산 액 (최종예산)	1,059 (1,059)	1,072 (1,072)	1,092 (1,122)	1,152 (1,152)	1,135
증 감 액		13	20	60	△17
증 감 률		1.2	1.9	5.5	△1.5

※ 증감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금액임.

□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지원**(예산서안 927p)

- 2016년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종료와 관련, 2017년 7월 17일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82]가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인천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34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그동안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각각 부동산 취득세의 40%와 75%를 감면 받았었는데, 공항공사는 2000년 이후 1,614억 원, 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1,123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었음. 두 공사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시 재정부담액은 교부세 페널티를 포함하여 각각 555억 원과 17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폐지 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적 용 사안 별	실제부과 예상액	감면 예상액(A)	교부세 페널티(B)	재정부담 (A+B)
공항 공사	종전	취득세 40% 감면 유지시	42,928	28,619	26,930	55,549
	현행	감면종료	71,546	0	0	0
항만 공사	종전	취득세 75% 감면 유지시	3,050	9,150	8,610	17,760
	현행	감면종료	12,200	0	0	0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자료와 인천항만공사 회의자료를 활용하여 취득세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세감면액의 94.1%는 지방교부세 페널티 요인으로 작용함.

82)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인천항만공사의 세금감면 폐지에 대한 환원정책 실시로 시와 항만공사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인천공항공사와는 지방세 감면 폐지후 새로운 상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항공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

<여객선 운임 보조 주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7 예산액	2018 예산안	증 감	비 고
계		11,974	15,077	3,103	
1	인천시민 여객선비 지원	3,800	5,026	1,226	
2	설·추석 명절 귀성객 여객선비 지원		1,620	1,620	설5일, 추석5일 전액 무료
3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비 지원		250	250	년간 상시 운임비 70%
4	옹진군 출향민 여객선비 지원		300	300	년간 상시 인천시민 수준
5	도서민 여객선비 보조	7,174	6,781	-393	운임 900~7,000원 차량 20%
6	백령발 오전출항 여객선 손실지원		100	100	
7	타 시·도민 여객선비 50% 지원	1,000	1,000	0	

-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예산서안 932p) 50억 2,600만 원은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83]

83)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제3조(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①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인)받는 수혜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에 따른 지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음.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인천시 70%, 선사 10% 등 정규 운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임.

<연도별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사업현황[84]>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비 고
이용인원	397,385	543,931	574,452	
증감현황		36.9%	5.6%	

- 명절 연휴기간동안 해외관광을 인천섬으로 유도하여 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명절(설,추석) 여객선 운임 보조**(예산서안 932p) 16억 2,000만 원, 도서지역이 고향인 출향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어를 장려하고 도서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출향민 여객선 운임 보조**(예산서안 932p) 3억 원, 군장병의 사기진작과 전국 각지의 면회객 유치로 인천섬 홍보 및 섬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임 보조**(예산서안 932p)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②제1항의 시민 중 도서민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서민에 준하는 자(도서에 상주하는 자 중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자)에 대하여 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운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①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며, 지원금의 일정액은 군·구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단, 도서민에 대한 지원금은 재정자금으로 부담한다.

②재정자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다.

8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505

-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예산서안 932p)

· 백령발 인천항로 여객선 씨호프호가 재정손실[85]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휴업하다가 폐업하는 등 여객선 재운항을 위하여는 선사의 재정손실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7. 6. 6. ㈜고려고속이 백령발 오전출항 여객선 재운항을 재개하였음.

· 2017년도 당초 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백령발 인천항로 운항여객 손실금 지원 5억 원(국비 4억 원, 시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국비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어 국비를 미확보 함에 따라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 또한 1회 추경에서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86]으로 시와 옹진군이 각각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에는 손실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3회 추경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 요구하였음.

· 한편, 현재 운항되는 여객선의 운항시간이 5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손실금 지원기준 편도 4시간 30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선사는 선박에 대해 엔진 교체 또는 새로운 선박 구입 등을 고려하고 있음.

85) 2014년 운항당시 유가 기준 및 2015년 유가를 기준으로 연간손실액 산정 : 300톤급 3억원, 500톤급 5억원
86) 시비보조사업 : 시 50%, 옹진군 50%

· 2017년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아직은 여객선 운항시간이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 예산안은 백령발 인천항로 오전출항 여객선 손실지원금으로 시와 옹진군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편성하였음.

□ 도로포장 유지보수 체계적 관리[87]

- **도로유지보수**(예산서안 952p)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198만 원이 증가된 68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음.

- **포트홀[88] 및 싱크홀[89] 등 도로파손에 따른 문제점**

· 포트홀은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철 폭설시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의 화학작용 및 지속적인 한파로 포장불량 구간의 소성변형에 따른 도로포장 균열로 인한 도로파손이 주된 원인으로 보수방식이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복구만을 시행함에 따라 쉽게 다시 파손되거나 파손부위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포트홀로 인한 도로사고발생시 관리청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보험사의 구상권 소송으로 이어져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음.

---

87)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인천광역시의회, 2017.11.) p.538~540

88) 포트홀(pot-hole) : 도로가 파손되어 구멍이 파인 곳을 말함. 아스팔트 일부가 부스러지면서 생긴 것으로 냄비(pot)처럼 생긴 구멍(hole)이란 의미가 있음.

89) 싱크홀(sink-hole) : 자연적, 인위적인 여러 이유로 지하수가 유출되며 형성된 지반 내 공동이 붕괴되어 나타나는, 대체로 좁은 규모로 땅이 가라앉아 생긴 구멍. 싱크홀은 퇴적암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남. 일반적으로는 지층 사이를 채우고 있던 지하수와 토사가 빠져나가면서 형성된 공간 위에 있는 지반이 무게를 못 이겨 가라앉을 때 발생함.

〈인천시 관리도로 포트홀 보수 및 소송현황〉

연 도 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포트홀(건)	6,340	5,530	6,021	5,875	
소 송(건)	6	8	3	7	

※ 2017년 9월 현재

· 싱크홀은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적인 싱크홀과 인위적인 싱크홀로 구분되며 자연적인 싱크홀은 주로 석회암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오랫동안 지하수에 탄산칼슘 성분이 용해되어 자연동굴이 형성되었다가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경우, 혹은 화산재 지형에서 많은 지하수가 갑자기 다량으로 유출되는 경우에 싱크홀이 발생함. 인위적 싱크홀은 세 가지 경우가 있음. ① 지하수가 많은 토사지반에서 터널 등을 굴착하며 지하수가 급격하게 유출될 경우 ② 상·하수도가 매설된 곳에서 상·하수도의 유출로 인접 토사가 쓸려갈 경우 ③ 공사 현장에서 굴착하며 인접 지하수나 토사유실에 대한 방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90])과 연계한 과학적인 보수방법과 예측가능한 예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예산편성과 확보방안 강구 필요**

· PMS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1991년부터 PMS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운영을 서울시는 SPMS(자체운영)하고 있음.

90)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 Pavement Management System) : 도로포장과 관련된 계획, 설계, 유지보수 및 평가의 전 단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함. 정기적인 도로 포장상태의 조사 및 평가를 통해 보수대상 구간을 선정하고 최적의 보수공법과 보수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장래 필요한 예산의 추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그간 육안에 의존한 표면보수에서 예측 가능한 보수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PMS시스템과의 연계로 연차별 사업우선순위와 근본적인 보수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도로유지보수 예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편성 도모

- **노후·불량도로의 적정정비에 소요예산 확보 필요**

·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재포장주기[91]를 감안할 때 연간 약 200억 원[92](재포장주기 10년 적용시)이 필요한 상황이나 2017년도 유지관리비용이 72억 원임

· 예산부족으로 노후불량 도로의 적기 보수가 어려워져 도로의 기능 및 내구성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각종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물류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적기에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도로유지보수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함.

91) 재포장 주기(국토교통부 국도포장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2) : 중차량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 (4~5년), 그 외 주요도로(7년 이상 주기로 재포장 유지관리 필요)
92) 산출내역 : 173,697a × 160만원 × 0.1(10년 주기) × 0.7%(아스팔트 포장부분)

2. 특별회계

가. 총 괄

1) 세 입

▢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예산 2조 419억 원 대비 22.2%, 4,477억 원이 증가된 2조 626억 원 규모임.

○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3,19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3,086억 원 대비 3.4%, 105억 원이 증액되었음.

- 증액 편성사유는 수도전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익 81억 원 증가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타 회계건설보조금 25억 증가에 따른 것임.

○ 하수도사업은 2,05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58억 원 대비 10.8%, 200억 원 증액되었음.

- 증액 편성사유는 사용료 수익의 15억 원 증가와 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인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사부담금 수입 9억 원과 지난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8억 원으로 증가에 따른 것임.

○ 경제자유구역사업은 4,72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2%, 368억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감액사유는 수익적수입에서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187억 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운영수입 57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아트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운영수익 등 82억 원,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과 송도 1,3/ 5,7/ 6,8공구 공동구사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88억 원, G-Tower 청사 임대료 등의 임대수익은 77억 원, 송도자원센터 운영수입 66억 원이 증가하였음.

- 자본적 수입에서는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과 아암로 확장공사,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38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년도 미수금 270억 원 발생에 따른 것임.

○ 학교용지 부담금 등 기타 특별회계는 1조 4,6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110억 원 대비 44.90%, 4,539억 원이 증액되었음.

- 증액 편성사유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로의 타 회계전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임.

○ 재난안전특별회계는 4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5억 원 대비 72.56%, 127억 원이 감액되었음.

- 이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을 편성·추진함에 따른 것임.

○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45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3,333억 원 대비 33.79%, 1,126억 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의료수급권자의 진료비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900억 원 증가에 따른 것임.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2,11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88억 원 대비 33.19%, 527억 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예탁금 이자수입 8억 원 및 순세계잉여금 851억 원 증가와 부담금 324억 원의 감소에 따른 것임.

○ 토지구획정리사업(7개소)는 33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536억 원 대비 38.1%, 204억 원이 감액되었음.

- 이는 잔여사업 수행중으로 매각사업수입이 감소됨에 따른 것임.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2,29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34억 원 대비 102.23%, 1,160억 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과 7호선 석남연장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65억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699억 원 증가에 따른 것임.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설치로 기타회계 전입금 614억 원 및 다른 회계로부터 728억 원의 예수금, 지역자원시설세 중 법령에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118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164억 3,000만 원으로 이루어져 2,031억 원 순증됨.

2) 세 출

▢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 2조 419억 원 대비 22.2%, 4,477억 원이 증가된 2조 626억 원 규모임.

○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3,19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3,086억 원 대비 3.4%, 1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2,05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58억 원 대비 10.8%, 200억 원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는 원도심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지원하여 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93]을 우리시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도로건설 565억, 공원조성 530억,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285억, 주차장 확충 218억, 전통시장 경영시설현대화 42억 등 2,031억 원이 순증되었음.

○ 도시철도사업에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1,299억,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70억 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134억 원 대비 102.3%, 1,160억 원이 증가하였음.

---

93)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도심 및 쇠퇴 도시지역의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등 5가지 유형을 나눠 추진.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마전도서관 건립 42억,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 75억,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2억,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39억, 검단 노인복지관 건립 10억, 석남녹지 조성사업 23억 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588억 원 대비 33.2%, 527억 원이 증가됨.

< 예 산 규 모 >

(단위:천원,%)

구분	2018 예산안		2017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2,462,623,181	100	2,014,907,799	100	447,715,382	22.2
공기업특별회계	997,590,877	40.51	1,003,859,215	49.82	△6,268,338	△63
기타특별회계	1,465,032,304	59.49	1,011,048,584	50.18	453,983720	44.9

○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변동추이를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의 비중이 전년도 49.82%에서 40.51%로 △9.31%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50.18%에서 59.49%로 9.31% 증가되었음.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타특별회계에서의 원도심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투입재원 확보를 위한 2,031억 원 순증으로 말미암아 전년대비 22.2% 증액 편성되었음.

3) 회계별 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2,462,623,181	2,014,907,799	447,715,382	22.2
공기업특별회계	997,590,877	1,003,859,215	△6,268,338	△0.6
상수도사업	319,110,903	308,561,010	10,549,893	3.4
하수도사업	205,761,899	185,766,050	19,995,849	10.8
경제자유구역사업	472,718,075	509,532,155	△36,814,080	△7.2
기타특별회계	1,465,032,304	1,011,048,584	453,983,720	44.9
학교용지부담금	9,819,382	12,533,640	△2,714,258	△21.6
재난안전	4,800,000	17,495,000	△12,695,000	△72.6
소방	118,739,543	113,151,688	5,587,855	4.9
의료급여기금	445,944,203	333,314,364	112,629,839	33.8
아시아경기대회	90,853,950	92,835,507	△1,981,557	△2.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211,516,047	158,807,825	52,708,222	33.2
수질개선	5,821,650	7,463,723	△1,642,073	△22.7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3,302,384	330,000	2,972,384	900.72
토지구획정리사업(7개 사업)	33,175,893	53,568,850	△20,392,957	△38.1
도시교통사업	34,275,999	40,777,301	△6,501,302	△15.9
광역교통시설	15,460,000	13,079,000	2,381,000	18.3
도시철도사업	229,425,508	113,448,025	115,977,483	102.3
도시개발	35,033,399	32,101,131	2,932,268	9.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58,500	350,920	7,580	2.16
기반시설	2,311,131	2,479,881	△168,750	△6.80
지하도상가	21,061,114	19,313,746	1,747,368	9.05
원도심활성화	203,135,619	0	203,135,619	순증

나. 회계별 검토

(1) 공기업특별회계

1) 개 요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0,039억 원 대비 0.6%, 63억 원이 감소된 9,976억 원 규모임.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이 32%, 하수도사업이 21%, 경제자유구역사업이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사업에서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 112억, 송도6·8공구 대2-1호선 건설 242억, 송도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107억, 문화공원 3.4지구 조성 159억, 장진도~무의도 연도교 건설 96억, 제3연륙교 건설 82억 등과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 사업비 △50억, 인천글로 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금 △20억, 송도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위탁사업비 △80억,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15억,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40억 원 등 368억 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0.6% 소규모 감액 편성됨.

< 예 산 규 모 >

(단위:천원,%)

구분	2018 예산안		2017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997,590,877	100	1,003,859,215	100	△6,268,338	△0.6
수 도 사 업	319,110,903	31.99	308,561,010	30.74	10,549,893	3.4
하수도사업	205,761,899	20.63	185,766,050	18.51	19,995,549	10.8
경제자유구역사업	472,718,075	47.38	509,532,155	50.75	△36,814,080	△7.2

2) 수도사업 특별회계

▢ 개요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4.74%, 105억 원이 증액된 3,191억 원을 편성하였음.

○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인구의 증가에 따라 물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급수공급, 상수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교체, 급수구역 확대[94], 유수율제고 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94) 급수구역 확대 지역

전체면적	급수가능 대상지역	기 급수공급지역	추가지역	급수면적 비율	비고
1063.05㎢	491.80㎢	335.65㎢	27.69㎢	68→74%	영종하늘도시, 송도신도시 및 옹진군 영흥면 등

< 기 관 별 예 산 편 성 현 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319,110,903	308,561,010	10,549,893	3.42
본 부	213,126,017	203,987,748	9,138,269	4.48
수 질 연 구 소	922,540	694,545	227,995	32.83
수도시설관리소	17,030,638	14,776,754	2,253,884	15.25
부평정수사업소	9,207,456	7,204,945	2,002,511	27.79
남동정수사업소	6,353,138	7,764,240	△1,411,102	△18.17
공촌정수사업소	3,866,618	4,132,569	△265,951	△6.44
수산정수사업소	6,229,591	4,251,628	1,977,963	46.52
중부수도사업소	17,172,861	16,233,102	939,759	5.79
남동부수도사업소	12,416,988	9,159,918	3,257,070	35.56
북부수도사업소	11,882,988	12,794,420	△911,432	△7.12
서부수도사업소	9,890,881	9,924,868	△33,987	△0.34
강화수도사업소	11,011,187	17,636,273	△6,625,086	△37.57

▢ **원수구입비**(524억 8,990만 원,예산안 69p)

○ 수돗물생산을 위하여 풍납 및 팔당원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취수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2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 원수구입비 예산편성 현황 >

구분	단가(㎥)	1일 구입량	구입비	비고
풍납계통	52.7원	378,500㎥	7,280,637천원	
팔당계통	233.7원	530,000㎥	45,209,265천원	

- 팔당계통 원수구입 ㎥당 단가가 풍납 계통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물량 및 급수구역의 확대 문제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사정이 여의치 않으나, 풍납 계통의 원수구입량을 증대하여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수구입비**(134억 907만 원, 예산안 78p)

○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강화, 영흥, 운연동 연동 지역의 인접지역인 김포시, 화성시, 광명시에서 정수를 구입하여 급수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88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이는, 지난 2004년부터 공촌정수장~강화대교 및 검단지역의 송수도관 확장사업을 벌여 지난해 12월 준공으로 인하여 강화군에 공급되었던 김포시 정수구입비용(88억 900만 원)이 절감된 결과임.

▢ **지원 사업성 시설비**(1억 5,000만 원, 예산안 78p)

○ 급수설비의 사용자에게 노후 옥내급수관개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교체대상은 201,700가구로 파악하고 교체예정 개소를 1,000가구로 산정하여 1억 5000만 원(150천 원×1,000개소)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이는 사회복지시설,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나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내급수설비의 갱생이나 세척,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95]에 따른 것임.

- 옥내급수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개량으로 실질적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비 산정이 교체대상 대비 다소 미약한 수준으로 보여지며, 대시민 홍보를 통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비교 자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사업개시	2007	2012	2008	2010	2016
추진실적	305,560가구/ 1,109억 원 ('07 ~ '16)	182세대 / 2700만 원('16)	787가구 / 4억5000만 원	194가구 / 19400만 원	26가구/ 2500만 원
2017년도 예산액	196억 원	80억 원	5억 원	3억 원	5000만 원

자료: 상수도사업본부

95)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1.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2. 수돗물수질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105억 8,000만 원, 예산안 271p)

○ 왕길배수권역 외 5개소 수질분석기 설치사업과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및 부평정수장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설치공사로 105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급·배수계통의 실시간 수질관리로 수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맛·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활용하고자 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대책**(57억 9,300만 원, 예산안 273-274p)

○ 강화·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과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공사, 기타 소규모수도시설3개소 개량사업으로 57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섬 주민들의 식수문제 해소목적에 따른 것임.

▢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 및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303억 ,예산안 273p)

○ 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학익·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 및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2단계)로 303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개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76%, 19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058억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분	2018 예산안	2017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하수과	205,761,899	185,766,050	19,995,849	10.76	

▢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10억 원, 예산서안 46p)

하수도관 파열에 따른 누수 등 하수도 관련 긴급 민원 및 침수 피해 등 재난에 대응하고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함.

▢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4억 4,000만 원, 예산서안 46p)

계속비 공사로서 석남유수지로 유입되는 하수 및 폐수를 차집하여 악취개선 및 침수예방을 도모하고자 4억4,000만 원을 편성함.

▢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46억 4,200만 원, 예산서안 46p)

가좌동, 석남동, 원창동 등 폐수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고농도 폐수 발생지역의 하수를 별도 차집 후 전 처리를 위한 하수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가좌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민간대행사업비**(110억 9,178만 원, 예산서안 50p)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로서 전년 대비 1.46%, 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11억 9,100만 원을 편성함.

○ 이는 '90. 10. 13. 인천남부SMC(주)와의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의하여 하수관로 62.9㎞에 대한 시설임대료임.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101억 4,608만 원, 예산서안 50p)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굴포천 우수토실 개선공사와 하수처리장 9개소 위탁운영비와 하수슬러지 고화처리 대체시설 설치비임.

○ **하수도 특별회계**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사용료로 인하여 최근 평균 당기순손실이 139억 원[96]에 달하고, 정부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강화 등의 규제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확충비용이 수반되어 하수도 사용료 적정성[97]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2012년 평균 30.0%, 2014년 평균 25.9%, 2016년 19.0%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인상요인은 내재

9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연도별 재무결산에 따른 당기순손실 : 연간 평균

구분	평균손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당기순손실		115억 원	181억 원	149억 원	151억 원	100억 원

97)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2016년도 하수도사업결산서)

구분	㎥당 요금	㎥당 원가	요금현실화율	인상요인
요금현실화 근거	554.09원	636.76원	87.02%	14.92%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수도 사업 경영의 효율화 등 재정절감 방안 추진 등의 병행이 필요함.

4)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 개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과 그의 부대되는 사업, 그 밖의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23%, 368억 1,400만 원이 감소된 4,727억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분	2018 예산안	2017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경제자유구역청	472,718,075	509,532,155	△36,814	△7.23	

▢ **IFEZ 소송관련 손해배상금**(450억 원, 예산서안 37p)

송도 1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민사소송 판결 대비 배상금으로 4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민사소송청구금액 394억, 예상 지연손해금 15억, 기타 6·8공구소송 관련 40억 원 등임.

< IFEZ 소송개요 >

사건명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	㈜대우건설 외 5
제소일자	2016. 3. 4.
청구취지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394억 원에 대하여 공동도비율과 해당 이자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라
청구원인	송도 1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산준공 관련 항로준설 여굴량 미지급 대금 및 인천 신항 진입항로 미지급 대금 청구

○ 이 사업은 소송쟁점사항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기술적 요소가 많아 소송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또한 소송가액이 394억 원, 지연이자율이 약 15%(1일 약1,600만 원)에 달해 예산확보가 안되어 부담할 수 있는 지연이자의 추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편성한 것임.

□ **광고선전비**(48억 1,000만 원, 예산서안 42p)

중앙 및 언론 인쇄매체나 광고노출효과가 큰 대중교통매체, 스포츠 마케팅 광고매체를 통한 IFEZ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3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예산증액 편성의 주요원인 사업은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 홍보사업 예산 25억 원의 신규 편성에 말미암은 것으로서 여타 광고매체 선전비에 비해 뚜렷한 이유 없이 상당히 큰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당초 예산 책정 시 광고노출효과에 대한 사전검증의 적정성 여부와 인천프로축구단 운영비를 우회지원 하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연도별 지원내역 >

(단위:천원, %)

구분	2016 예산	2017 예산	2018 예산안
인천프로축구단 IFEZ 브랜드 홍보사업	2,500,000	2,500,000	2,500,000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81억 2,900만 원, 예산서안 56~61p)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시설 개관준비와 개관에 따른 필요 예산으로 8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주 요 사 업 내 역 >

사업내역	예산액(만 원)	비고
계	81억 2,900	
기간제 등 인건비	3억 2,100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5억 5,500	
공공운영비	11억 1,900	
소모품 및 자재구입 등	1억 1,600	
시설물 관리 위탁 등	15억 4,900	
행사홍보 및 운영비 등	2억 3,800	
지원단지 대행사업비	42억 3,100	

○ 이 사업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운영비 18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도 시설준공 및 기부채납 지연으로 2017년 제3회 추경 편성 시 제1회 추경 편성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설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른 법령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한 절차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운영비**(42억 3,800만 원, 예산서안 80p)

생활폐기물 문전 수거방식에서 벗어나 청소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으로 전년 대비 4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자동집하시설 운영현황>

구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7공구
위치	송도동 15-, 8, 28-7번지	송도동 5-2번지	송도동 32-17번지	송도동 11-10번지	송도동 210-4번지	송도동 159-1번지
총사업비	313억 원	170억 원	179억 원	169억 원	634억 원	
처리용량	11,651톤/년	7,300톤/년	10,005톤/년	10,786톤/년	6,935톤/년	9,892톤/년
처리실적 (2016년)	3,887톤/년	2,525톤/년	860톤/년	872톤/년	424톤/년	1,411톤/년
처리비율	33.36%	34.59%	8.60%	8.08%	6.11%	14.26%

자료: 경제자유구역청

○ 이 사업은 음식물폐기물의 관로 흡착으로 인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시 관로 속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섞여 현재 혼합수거 중이며, 폐기물 수집 시 집하장 주변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청에서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기술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개량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송도 6·8공구는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시설로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로 처리할 계획임.

○ 또한, 이 사업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시설 처리용량 대비 처리비율이 10% 미만인 곳이 절반에 육박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시설개량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2) 기타 특별회계

1) 개 요

< 예 산 규 모 >

(단위: 천원,%)

구분	2018 예산안	2017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기타특별회계	1,465,032,304	1,011,048,584	453,98,720	44.9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819,382	12,533,640	△2,714,258	△21.66	
재난안전특별회계	4,800,000	17,495,000	△12,695,000	△72.56	
소방특별회계	118,739,543	113,151,688	5,587,855	4.9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5,944,203	333,314,364	112,629,839	33.79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90,853,950	92,835,507	△1,981,557	△2.13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211,516,047	158,807,825	57,708,222	33.19	
수질개선특별회계	5,821,650	7,463,723	△1,642,073	△22.00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3,302,384	330,000	2,972,384	900.72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55,690	947,100	△591,410	△62.44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535,300	17,952,000	△13,416,700	△74.74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730,000	5,406,500	△2,676,500	△49.51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78,800	691,600	△612,800	△88.61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4,216,882	12,451,433	1,765,449	14.18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369,503	13,539,000	△8,169,497	△60.34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887,700	2,579,200	3,308,500	128.28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4,275,999	40,777,301	△6,501,302	△15.9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5,460,000	13,079,000	2,381,000	18.2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29,425,508	113,448,025	115,977,483	102.23	
도시개발특별회계	35,033,399	32,101,131	2,932,268	9.1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58,500	350,920	7,580	2.16	
기반시설특별회계	2,311,131	2,479,881	△168,750	△6.80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1,061,114	19,313,746	1,747,368	9.05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03,136	0	203,136	순증	

▢ **기타 특별회계는**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로서 전년 대비 44.9%, 4,540억 원이 증가한 1조 4,6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1,126억, 수도권매립지 527억, 도시철도사업 1,160억 원이 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신설로 2,031억 원이 순증으로 인하여 대폭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짐.

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개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고,「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발사업지역 내 공립 초·중·고교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1.66%, 27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9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분	2018 예산안	2017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819,382	12,533,640	△2,714,258	△21.66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96억 1,873만 원, 예산서안 1006p)

○ 2012년도에 체결된 「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출금 전출계획 협약서」에 따르면 2018년도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은 107억 원을 반영하여야 하나[98], 예산안에는 70억원이 부족한 37억 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추계에 따라 징수예정금액이 96억 1,873만 원으로 교육청의 당해 연도 분담금 요구액 59억 1,873만 원을 차감하여 당해 연도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 2018년도 예산 감소는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제5항[99]에 따른 군·구 징수부담금이 전년 대비 1억 1,785만 원이 감소됨에 기인한 것임.

- 금년 3회 추경 편성 시에도 미전출금 130억 원을 계상하는 등 전출계약 협약서에 따라 해마다 전년도에 미 지급되었던 전출계획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립 초·중·고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중대성을 감안하여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98)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전출계획 협약서에 따른 전출계획

(단위:백만원)

총액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115,600	56,900	18,100	20,200	10,700	9,700	

99)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제5항
⑤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3) 재난안전 특별회계

▢ 개요

재난안전특별회계는「지방교부세법」제9조의4 및「소방안전 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2.56%, 126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율
계	4,800,000	100.0	17,495,000	100.0	△12,695,000	△72.56
재 난 안 전 본 부	300,000	6.25	12,495,000	71.42	△12,695,000	△97.60
안 전 정 책 과	11,696	0.24	0	0	11,696	순증
비 상 대 책 과	288,304	6.01	0	0	288,304	순증
수 질 환 경 과	1,602,000	33.37	1,780,000	10.17	△178,000	△10.0
교통정보운영과	2,898,000	60.38	3,220,000	18.41	△322,000	△10.0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타 특정회계의 특정재원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7. 11. 14.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재난안전본부에서 126억 9,500만 원, 수질환경과 1억 7,800만 원, 교통정보과에서 3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연도별 집행실적 자료>

(단위: 천원, %)

구분	2016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비고
안전정책과	0	0	11,696	
수질환경과	1,750,000	1,780,000	1,602,000	
교통정보운영과	3,250,000	3,220,000	2,898,000	

4) 소방 특별회계

▢ 개요

소방 특별회계는 체육진흥과, 소방본부, 10개의 소방서와 소방안전학교 등의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94%, 55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1,187억 3,954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율
계	118,739,543	100.0	113,151,688	100.0	5,587,855	4.94
체 육 진 흥 과	50,830,945	42.81	46,032,491	40.68	4,798,454	10.42
소 방 본 부	38,472,931	32.40	47,073,154	41.60	△8,600,223	△18.27
직 속 기 관 (소방서,안전학교)	29,435,667	24.79	20,046,043	17.72	9,389,624	46.84

▢ **장기근속자 해외시찰**(2억 6,400만 원, 예산서안 1046p)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격려하기 위한 해외연수비용으로서,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함.

○ 이는 「후생복지 조례 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2018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연수계획(안)」- 市 인사과-18223(2017.8.29.)에 따라 2018년도부터 25년 이상 재직자 중 정년도래자도(~59년생) 포함되어 대상자 32명 증원에 따른 것임.

▢ **소방장비 보강**(58억 8,800만 원, 예산서안 1047p)

신규차량 및 노후 소방차량 교체비로 전년 대비 37억 6,100만 원이 감소된 58억 8,800만 원을 편성함.

○ 이는 2015 ~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의 중점 투자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대한 집중적인 보강이 이루어져 노후화 비율이 축소된 데 따른 것임.

< 주력 노후 소방차량 교체현황 >

(단위: 대)

차량	합계	펌프	물탱크	화학	사다리	구조	조연	지휘	조사	구급
내구연한 경과	74	20	7	3	2	2	3	5	5	27
2017년 교체	46	13	5	1	2	1	3	5	5	11
노후잔여	28	7	2	2	-	1	-	-	-	16
2018 교체계획	25	6	2	1	-	1	-	-	-	15

자료: 소방본부

▢ **개인보호장비 구입**(21억 9,700만 원, 예산서안 1055p)

특수 방화복 등 개인안전장비 및 화재진압장비의 보강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1억 9,700만 원을 편성함.

○ 2015 ~ 2017년도 소방안전 교부세 중점투자로 장비보유율 100% 이상, 노후율 0%를 유지하고 있어 2018년도부터는 내용연수 도래 장비 및 신규 임용자 수요를 반영한 것임.

< 개인보호장비 현황 >

(단위: 연,개,%)

장비명		내용연수	현황			
			보유기준	보유수량	보유율	노후율
합계			37,962	40,865	107	0
공기호흡기	등지게	10	2,472	2,698	109	0
	용기	10	4,950	5,376	108	0
	면체	3	4,950	5,371	108	0
	보조마스크	3	2,472	2,518	101	0
특수방화복		3	4,229	4,450	105	0
헬멧		5	2,472	2,619	105	0
안전화		소모품	4,229	4,619	109	-
방화두건		소모품	4,229	4,697	110	-
진압장갑		소모품	4,229	4,560	107	-
안전장갑		소모품	2,472	2,699	108	-
안전헬멧		3	1,258	1,258	100	0

자료: 소방본부

▢ **AG신설경기장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237억 1,600만 원,예산서안 1196p)

재정부담 최소화와 경기장별 시설과 입지특성에 적합한 사후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수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억 7,500만 원이 증가된 23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 최근 2년간의 AG신설경기장의 재정수지를 비교해 보면 2016년도는 실수입액이 집행액의 45.7%였으나, 2017년도는 55.6%로 예상되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누적적자도 증가하고 있음.

< 예 산 규 모>

(단위: 억원)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AG신설 경기장16개소	세입	세출	수지	수입	지출	수지
	91	199	△108 (45.7%)	123	221	△98 (55.6%)

○ 향후 주기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장별 체육프로그램 운영실태, 시설관리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단기 운영 과제 도출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개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100]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산부 산전 진료비 등 의료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79%, 1,12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45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5,944,203	333,314,364	112,629,839	33.779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101]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90,103명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매월 보건복지부 지정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비인 민간위탁금(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100)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 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01)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 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이 의료급여수급자의 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와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 완화[102]로 의료급여진료비 수가 상승으로 1,122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음.

6)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 개요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908억 5,395만 원, 예산서안 1176p)는 전년 대비 2.13%, 19억 8,200만 원이 감액된 90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체육진흥과	90,853,950	92,835,507	△1,981,557	△2.13	

○ 주요 편성내용은 경기장건설 지방채 상환원금 650억 1,200만 원금과

10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2017. 10. 1. 시

구분	지급대상	본인부담율	비고
노인틀니	1종	20 → 5%	
	2종	30 → 15%	
치매 환자	입원	10 → 5%	
	외래(병원급이상)	15 → 5%	
15세 이하 아동 입원	2종 6~15세입원	10 → 3%	
치아 홈 메우기	2종 입원	10 → 5%	
	외래(병원급 이상)	15 → 5%	
임플란트	1종	20 → 10%	'18. 하반기 시행
	2종	30 → 20%	

이자 248억 원 및 GB훼손지 복구사업 추진 사업비 자금 및 경기장 건설 관련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 10억 4,100만 원 등이며,

○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의 변경에 따라 조기상환 미 시행 505억과 경제자유구역청 공모채 buy-back(환매)에 따른 상환일정 변동에 의한 184억 등 689억이 감액됨에 따른 것임.

< 경기장건설 지방채 상환계획 변경사항 >

(단위: 억원)

구분	2018년도	금 액	사 유
변경 전	원금	1,340	
	이자	248	
변경 후	원금	651	·재정여건에 따른 조기사항 미 시행- △505 ·공모채 상환일정 변동- △184
	이자	248	

○ 2014 AG 관련사업(GB훼손지 복구사업)이 201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후 국비(기금)정산 등 회계운영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7. 10. 31.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AG특별회계 폐지 시 경기장건설 지방채 등을 일반회계에서 상환예정임.

- 경기장건설 지방채는 원리금이 1조4,295억 원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서 2017년까지 상환한 금액은 4,503억 원으로 향후 2029년까지 상환예정금액은 9,792억 원임.

< 경기장건설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 >

(단위: 억원)

연도별	합계	2009~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29
계	14,375	1,987	459	1,140	917	899	1,334	7,639
원금	10,970	620	274	851	651	651	1,105	6,818
이자	3,405	1,367	185	289	266	248	229	821

7)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2,115억 원, 예산서안 1,186)

▢ 개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103]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수도권매립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19%, 527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2,11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율
계	211,516,047	100.0	158,807,825	100.0	52,708,222	33.19
자치행정과	5,223,000	2.47	0	0	5,223,000	순증
노인정책과	1,000,000	0.47	0	0	1,000,000	순증
문화콘텐츠과	11,680,000	5.52	11,732,000	7.39	△52,000	△0.44
체육진흥과	3,936,000	1.86	0	0	3,936,000	순증
도로과	4,176,000	1.97	0	0	4,176,000	순증
환경정책과	72,000	0.03	0	0	72,000	순증
대기보전과	1,340,000	0.63	0	0	1,340,000	순증
자원순환과	178,430,047	84.36	144,817,825	91.19	33,612,222	23.21
공원녹지과	4,530,000	2.14	0	0	4,530,000	순증
버스정책과	1,129,000	0.53	1,505,000	0.95	△376,000	△24.98

○ 증액편성 사유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로 인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 526억 700만 원, 13,167.60%, 예탁금 411억 6,000만 원의 순증임.

10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율
계	211,516,047	100.0	158,807,825	100.0	52,708,222	33.19
물 건 비	130,400	0.06	7,400	0	123,000	1662.16
경 상 이 전	5,607,000	2.65	40,000	0.03	5,567,000	13197.50
자 본 지 출	32,944,000	15.58	18,640,000	11.74	14,304,000	76.74
내 부 거 래	41,160,590	19.46	0	0	41,160,590	순증
예비비 및 기타	131,674,057	62.25	140,120,425	88.23	△8,446,368	△6.03

○ 자치단체간부담금이나 예탁금의 대폭적인 증가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유재원의 전출과 예탁 등을 통해 인천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여유재원은 현재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클 경우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어 일반회계로의 전출이나 예탁을 확대[104]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운용된다는 점과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105]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필요가 있음.

---

104)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05)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2.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 예탁금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간 직접 전·출입은 예산의 총계규모와 순계규모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인천시의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회계 간 전·출입 규모만큼 과다하게 포장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확정을 전제로 하여 예탁금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예산의 원칙[106]에 부합하지도 않고,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함.

▢ **사월마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자체 분담금**(7,200만 원, 예산서안 1196p)

사월마을 주변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등 업체에서 발생한 분진, 악취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신청에 대한 환경보건위원회(환경부)개최 결과, 청원 수용에 따른 주민건강영향실시에 따른 지자체분담금(30%)으로서 신규로 7,200만 원을 편성함.

106) 예산의 원칙

아.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50p)

< 사월마을 예산지원 사업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원기관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소 계		5건/11억 5백만 원	1,105	
2017	서구	사월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350	
	서구	사월마을 마을 안길 도로 확·재포장공사 용역	300	
	서구	사월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263	
	서구	사월마을 방범CCTV 설치공사	96	
	환경정책과	사월마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자체 분담금	96	
소 계		2건/15억 72백만 원	1,572	
2018	서구	사월마을 마을 안길 도로 확·재포장 공사비	1,500	도로과
	환경 정책과	사월마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자체 분담금(2차분)	72	

□ **김포시 서부복지관 건립**(50억 원, 예산서안 1198p)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의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김포시 요청에 따라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함.

□ **학운리 일원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2억 3,500만 원,예산서안 1198p)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지역인 양촌읍 학운리 일원 지역 주민의 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승강장 등 시설확충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함.

7) 수질개선 특별회계(58억 2,165만 원, 예산서안 1216p)

▢ 개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등) 및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용, 지역수질개선과 상·하류협력증진사업 등 수계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상·하류협력증진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 물 관련 대민 홍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 16억 4,200만 원을 감액하여 5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수질환경과	5,821,650	7,463,723	△1,642,073	△22	

○ 주요감액 사유는 한강수계 수질보전 보전 예산에서 53억 6,332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상·하류협력 지원사업[107]인 부평정수사업소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52억 3,5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임.

107) 상·하류 협력 지원사업

◇ 한강수계 상·하류 지역의 공영발전을 실현하고 한강수계의 수질보전과 상·하류 협력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발굴 추진

○ 추진근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

8)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33억 238만 원, 예산서안 1228p)

▢ 개요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제17조(부담금의 사용) 제3항에 근거하여 2016년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조례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담)에 따라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및 기계장비를 교체·보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72%, 2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수질환경과	3,302,384	330,000	2,972,384	900.72	

○ 증액 편성 사유는 2017. 9. 25.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개정으로 2018년 1월부터 부과·징수 기관이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인천시로 변경됨에 따라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4억 9,293만 원이 순증됨.

9)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331억 7,589만 원, 예산서안1237p)

▢ 개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등 7개의 특별회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는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교부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잔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는 환지처분이 진행 중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07%, 20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31억 7,589만 원이 편성되었음.

○ 감액 편성사유는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사업은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이들 사업지구에 대한 청산금 징수·교부 및 채비지 매각업무, 미집행 잔여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것임.

< 예 산 규 모 >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율
종합건설본부(계)	33,175,893	100.0	53,568,850	100.0	△20,392,957	△38.07
검 단 1 지 구	355,690	1.1	947,100	1.77	△591,410	△62.44
검 단 2 지 구	4,535,300	13.66	17,952,000	33.51	△13,416,700	△74.74
원 당 지 구	2,730,000	8.23	5,406,500	10.09	△2,676,500	△49.51
당 하 지 구	78,800	0.24	691,600	1.29	△612,800	△88.61
오 류 지 구	14,216,882	42.84	12,451,433	23.24	1,765,449	14.18
마 전 지 구	5,369,503	16.18	13,539,000	25.28	△8,169,427	△60.34
불 로 지 구	5,887,700	17.75	2,579,200	4.82	3,308,500	128.28

-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3조(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지구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 매각체비지 및 미 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등 수익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서구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사업인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는 아직까지도 자금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지 못하고 있어 자금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면밀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금부족 문제 현황 >

예탁금 (빌려준 지구)	예수금 (빌려받은 지구)	금액	예수·예탁일	상환일
합계		518억 7,000만 원		
검단1지구	검단2지구	14,0억 원	'15. 12. 17.	'18. 12.
	오류지구	83억 원	'15. 12. 17.	'18. 12.
	원당지구	13억 7,000만 원	'16. 12. 19.	'19. 12.
당하지구	검단2지구	40억 원	'15. 12. 17.	'18. 12.
	오류지구	122억 원	'15. 12. 17.	'18. 12.
		120억 원	'16. 7. 8.	'19. 7.

1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342억 7,599만 원, 예산서안1311p)

▢ 개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주차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교통안전법」및「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체계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주차장시설 및 확충 필요경비, 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 및 자본금, 벽지노선 운영 등으로 인한 손실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경영개선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5.94%, 65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34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율
교 통 국(총계)	34,275,999	100.0	40,777,301	100.0	△6,501,302	△15.94
교 통 정 책 과	18,650,271	54.41	10,145,924	24.88	8,504,347	83.82
버 스 정 책 과	1,721,959	5.02	8,681,407	21.29	△6,959,448	△80.16
철 도 과	200,000	0.58	0	0.00	200,000	순증
택 시 화 물 과	1,809,000	5.28	1,560,000	3.83	249,000	15.96
교 통 관 리 과	11,594,769	33.83	20,189,970	49.51	△8,595,201	△42.57
교통정보운영과	300,000	0.88	200,000	0.49	100,000	50.00

○ 주요 감액편성 사유는 버스정책 사업에서 71억 5,944만 원 및 공영주차장 확충 등에서 128억 5,21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들 사업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됨에 따른 것임.

▢ **대중교통오지지역지원**(2억 4,945만 원,예산서안1316p)

이 사업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셔틀 버스 운행지원으로 자연부락거주자들의 교통 편의제공을 위한사업으로서, 서구 대곡마을 1대, 계양구 이화동 2대, 중구 영종관내자연부락 7대, 중구 소무의도 1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기 전년 대비 2억 4,945만 원이 증액되어 7억 6,31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계양구 이화동 셔틀버스 및 중구 영종·용유 공영버스, 중구 소무의도 셔틀버스 구입 지원을 위한 것임.

▢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2억 1,900만 원, 예산서안1319p)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은 외국도시택시업체를 견학하여 외국교통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900만 원을 편성함.

○ 증액편성 사유는 운수종사자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개인택시 조합원 45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른 것임.

○ 개인택시 조합원은 개인사업자로서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조합, 인천시청과의 노·사·정 협력프로그램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자칫 보조금 지원 목적 외 지출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지원대상이 예산지원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1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154억 6,000만 원, 예산서안1338p)

▢ 개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7[108],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20%, 2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15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금 액	금 액	비 율
교 통 정 책 과	15,460,000	13,079,000	2,381,000	18.20

○ 사업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49억 6,000만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예비비 105억 원임.

108)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12)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2,294억 2,550만 원, 예산서안1349p)

▢ 개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2.23%, 1,15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율
교 통 국 (총계)	229,425,508	100.00	113,448,025	100.00	115,977,483	102.23
철 도 과	53,581,621	23.35	61,086,100	53.85	△7,504,479	△12.29
도시철도건설본부	175,843,887	75.65	52,361,925	45.15	123,481,962	235.82

○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의한 것임.

▢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369억 7,100만 원, 예산서안1353p)

전년 대비 205억8,6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목표공정 달성을 위한 소요사업비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2020년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사업비 임.

< 사 업 개 요 >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 ~ '20년
총사업비	8,076억원 (국비 4,677억원 시비 3,399억원)
사업규모	연장 7.36km, 정거장 7개소
지원조건	국비 60%, 시비 40%
사업시행주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1,298억 9,300만 원, 예산서안1354p)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은 서울7호선과 인천2호선과의 환승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청라국제도시 등 서·북부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광역도시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3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9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사 업 개 요 >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년 ~ '20년
총사업비	3,829억원 (국비 2,297억원 시비 1,532억원)
사업규모	연장 4.165km, 정거장 2개소
지원조건	국비 60%, 시비 40%
사업시행주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13) 도시개발 특별회계(350억 3,339만 원, 예산서안1375p)

▢ 개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사업진행 및 종료후 잔여업무 수행, 이관업무 지원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13%, 29억 3,226만 원을 증액한 350억 3,339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금 액	금 액	비 율
계 발 계 획 과	35,033,399	32,101,131	2,932,268	9.13

○ 증액편성 사유는 향후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송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대비하여 예비비 349억 5,111만 원을 편성한 것에 따름.

1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350억 3,339만 원, 예산서안1369p)

▢ 개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일몰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 및 수시 발생가능한 매수청구를 대비하고 매수청구자에게 토지보상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업무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긴급예산지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로 전년 대비 758만 원이 증액된 3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금 액	금 액	비 율
시 설 계 획 과	358,500	350,920	7,580	2.16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매수요청에 의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매해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한 후 청구시 시설비로 전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2014년도 4월 643백만 원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매수청구가 없는 상태임.

15) 기반시설 특별회계(23억 1,113만 원, 예산서안 1392p)

▢ 개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109]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각 구청에서 시에 수납된 기반시설부담금중 30%를 군·구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0%, 1억 6,875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1,113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금 액	금 액	비 율
계 발 계 획 과	2,311,131	2,479,881	△168,750	△6.80

109) 기반시설부담금 :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

▢ **징수교부금**(3,000만 원, 예산서안 1396p)

징수교부금은 건축 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 시 부과하는 수입[110]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중 市 귀속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군・구)에 교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중구 1건 11,094천 원에 대한 그쳐 전년 대비 6,000만 원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함.

▢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반환금**(1억 원, 예산안 1396p)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반환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에게 건축허가의 취소 또는 건축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기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전년 대비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환급예정 금액의 감소에 따른 것임.

<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예정 자료>

(단위:천원)

구분	합계	중구	남동구	강화군
건수	12	3	3	6
금액	88,985	15,000	53,985	20,000

110) 근거규정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부과대상)

○ 연도별 세입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6		2017		2018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일반부담금	300,000	42,005	300,000	0	100,000	0

16) 지하도상가 특별회계(210억 6,111만 원, 예산안 1402p)

▢ 개요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하도상가 15개소(3,597개 점포)에 대한 위탁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9.05%, 17억 4,736만 원을 증액하여 210억 6,111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금 액	금 액	비 율
건 설 심 사 과	21,061,114	19,313,746	1,747,368	9.05

○ 증액편성 사유는 동인천, 부평, 주안시민지하도 상가 등 3개소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비 15억 원, 지하도상가 수선교체비 5억 5,175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 점증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 예산집행에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경영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임.

< 2014년도 이후 세출예산 변동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	2018 예산안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증·감율)	123 (22.36)	135 (9.76)	140 (3.30)	193 (37.86)	211 (9.05)

17)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2,031억 3,561만 원, 예산안 1411p)

▢ 개요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는 도심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지원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111]을 우리시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등 계정별로 구분하여 도시재생관련 사업 및 도시정비기금 출연, 공원·녹지조성 및 군·구의 공원녹지 조성에 대한 지원, 생태하천 개선사업, 학교·보육시설 확충 개선 등의 사업을 하고자 2018년 예산안은 신규로 2,031억 3,561만 원이 편성되었음.

111)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도시 및 쇠퇴 도시지역의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등 5가지 유형을 나눠 추진.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금 액	금 액	비 율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203,135,619	0	203,135,619	순증

○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확정을 전제로 하여 예탁금과 예수금을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예산의 원칙[112]에 부합하지도 않고,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 예산안 현황

○ 세입예산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입은 「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법

112) 예산의 원칙

아.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50p)

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118억 6,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164억 3,000만 원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14억 4,582만 원,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728억 4,559만 원으로 이루어져 2,031억 3,516만 원이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금 액	금 액	비 율
총 계	203,135,619	0	203,135,619	순증
세 외 수 입	52,414,200	0	52,414,200	순증
보 조 금	16,430,000	0	16,430,000	순증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4,291,419	0	134,291,419	순증

- 원도심활성화 세입예산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3조[113]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와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특정세입·특정세출이라는 특별회계의 특성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113)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조(회계의 세입 항목 및 규모) ① 회계의 계정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국고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교부세, 융자금, 부담금 및 개발 이익금 등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 세출예산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기반, 환경녹지 및 교육문화 경제의 3개의 계정을 두고 계정별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10억 4,7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3억 8,300만 원 및 시 예산 1,867억 561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 당초예산(B)	증감(A-B)	
	금 액	금 액	금 액	비 율
총 계	203,135,619	0	203,135,619	순증
교육협력담당관	3,700,000	0	3,700,000	순증
관광진흥과	2,054,380	0	2,054,380	순증
도시경관과	2,232,350	0	2,232,350	순증
도시재생과	19,611,903	0	19,611,903	순증
주거환경과	4,966,105	0	4,966,105	순증
도로과	56,547,781	0	56,547,781	순증
고속도로일반화 추진단	28,485,000	0	28,485,000	순증
공원녹지과	52,999,781	0	52,999,781	순증
버스정책과	4,175,616	0	4,175,616	순증
교통관리과	21,805,500	0	21,805,500	순증
경제정책과	4,157,203	0	4,157,203	순증
산업진흥과	2,400,000	0	2,400,000	순증

▢ **교육환경개선 지원**(37억 원, 예산안 1420p)

교육환경개선 지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 노후시설(초등돌봄교실포함)개선 지원을 위해 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명품관광도시육성**(20억 5,438만 원, 예산안 1421p)

명품관광도시육성은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과 지역 청년대상 관광 콘텐츠 공무, 사업화 지원, 시내 및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시티투어 운영으로 원도심지역의 숨겨진 관광자원의 발굴 및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군·구 테마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 및 인천관광 콘텐츠 공모·지원, 인천시티투어 운영 등에 20억 5,4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명품도시 지향 도시경관 형성**(22억 3,235만 원, 예산안 1422p)

명품도시 지향 도시경관 형성은 지역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원도심이 조화로운 안전하고 쾌적한 희망인천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5차) 3억 9,800만 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5억 원,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10억 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억 2,500만 원 등 22억 3,2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196억 1,190만 원, 예산안 1424p)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은 인천원도심균형발전계획수립 10억 원,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18억 3,900만 원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1억 원, 동 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12억 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52억 1,600만 원,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6억 4,530만 원,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6억 2,050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5억 2,500만 원, 만석어촌마을 및 부평1지구 취약지역 주민자생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29억 1,600만 원 등으로 196억 1,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사업방향을 논의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재생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는 민·관 업계 지원조직인 '도시재생 지원센터'[114]가 아직까지도 설립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급등, 젠트리피케이션[115] 확산 등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김에 따라 재생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114) 도시재생 지원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민과 행정의 중간지원기구로서 인천형 도시재생 지원·발굴 및 기반구축을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

115)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49억 6,610만 원, 예산안 1428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원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수구 농원마을 및 서구 회화마을, 서구 가재울마을 생활환경개선으로 13억 5,600만 원, 애인동네만들기 시범사업 34억 원 및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금 2억 1,010만 원 등으로 49억 6,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원도심 도로망 확충**(565억 6,800만 원, 예산안 1429p)

원도심 도로망 확충은 원도심지역 활성화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 외 3 및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 1-327호선 도로개설 사업으로 565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고속도로 일반화**(284억 8,500만 원, 예산안 1431p)

고속도로 일반화는 경인고속도로 도로기능 개선을 위하여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L=10.45km, B=50m)구간의 옹벽・방음벽철거와 도로포장공사 등을 위해 284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녹지조경사업**(529억 9,978만 원, 예산안 1432p)

녹지조경사업은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하고 도심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

는 사업으로 관교근린공원 외 13개 공원조성 521억 4,001만 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상환 8억 5,977만 원 등 529억 9,9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공원조성 사업현황 자료 >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편성사유	기대효과
관교근린공원	280,000	실시계획 인가 용역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실효방지를 통한 공원조성으로 원도심 환경개선
문학근린공원	6,600,000	보상비		
장기근린공원	3,305,000	용역, 보상		
청량산림휴양공원	250,000	실시계획 인가 용역		
청솔근린공원	114,000	실시계획 인가 용역		
소래습지생태공원	31,868,000	보상비		
인천대공원	15,000	보상비		
도룡농도시생태공원	466,000	실시계획 인가 용역		
함봉근린공원	271,000	실시계획 인가 용역		
신촌공원	835,000	영향평가 용역		
신촌공원 (주안교회 앞)	660,000	용역, 보상		
계양근린공원	448,000	실시계획 인가 용역		
새벌근린공원	269,000	실시계획 인가 용역		
연희근린공원	3,841,000	실시계획 인가 용역		

▢ **버스운행사업지원**(41억 7,561만 원, 예산안 1435p)

버스운행사업지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수단 확보로 소외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한 버스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화군 벽지노선(63개 노선, 40대)손실보상 지원 28억 7,561만 원과 옹진군 농어촌공영버스 14개 노선, 15대에 대한 운송사업 지원 13억 원 등 41억 7,56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공영주차장 확충**(218억 550만 원, 예산안 1436p)

공영주차장 확충은 원도심 주차시설 확충을 통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원도심 주차환경을 개선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자본보조 167억 5,600만 원, 신규로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 20억 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24억 1,100만 원,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사업 2억 6,700만 원, Green Paking 개별사업[116] 2억 4,8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8,600 만 원,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117] 3,750만 원 등 218억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116) Green Paking 개별사업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확보가 가능한 주택(빌라, 다세대 포함)에 대한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117) 지원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항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조성**(24억 원, 예산안 1439p)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은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노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16억 원,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 8억 원 등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3. 기 금

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1) 기금별 조성규모(연도말 기준)

(단위: 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조성액 ⓐ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 ⓐ+ⓑ-ⓒ	증 감 ⓓ-ⓐ	증감률 (%)
		수입 ⓑ	지출 ⓒ			
총 계	1,347,773,792 (1,209,139,075)	245,364,631 (237,845,770)	317,791,827 (315,515,528)	1,275,346,596 (1,131,469,317)	△72,427,196 (△77,669,758)	**△5.37**
통합관리기금	138,634,717	7,518,861	2,276,299	143,877,279	5.242,562	**3.78**
남북교류협력기금	1,372,358	17,070	1,202,700	186,728	△1,185,630	**△86.39**
지방채상환기금	463,512	10,703,929	11,155,000	12,441	△451,071	**△97.32**
지역개발기금	925,972,072	143,722,745	169,367,117	900,327,700	△25,644,372	**△2.77**
지방세발전기금	73,912	489,354	516,849	46,417	△27,495	**△37.20**
재난관리기금	60,614,961	35,230,518	21,278,212	74,567,267	13,952,306	**23.02**
재해구호기금	29,623,900	595,440	3,700,000	26,519,340	△3,104,560	**△10.48**
사회복지기금	10,738,020	459,121	455,671	10,471,470	3,450	**0.03**
식품진흥기금	6,577,346	1,386,880	1,987,370	5,976,856	△600,490	**△9.13**
양성평등기금	4,096,708	84,963	100,000	4,081,671	△15,037	**△0.37**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64,000	558,487	810,166	112,321	△251,679	**69.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0,397,705	21,003,838	43,253,660	28,147,883	△22,249,822	**△44.14**
중소기업육성기금	82,394,889	21,152,220	51,365,000	52,182,109	△30,212,780	**△36.67**
에너지사업기금	25,550,296	2,141,455	8,848,663	18,843,088	△6,707,208	**△26.25**
농어촌진흥기금	10,899,396	299,750	1,475,120	9,724,026	△1,175,370	**△10.78**

* ( )안은 통합관리기금 제외 시 총계

2)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설치년도	자 금 운 용 계 획				소관부서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04,683,626**	**627,948,191**	**23,264,565**	**3.70**	예산담당관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1,389,428	1,630,952	△241,524	**△14.81**	정책기획관실
통합관리기금	2000	64,123,574	53,008,353	11,115,221	**20.97**	예산담당관실
지방채상환기금	1999	11,164,068	15,683,763	△4,519,695	**△28.82**	재정관리담당관실
지역개발기금	2017	247,767,117	315,631,077	△67,863,960	**△21.50**	재정관리담당관실
지방세발전기금	2011	563,266	518,845	44,421	**8.56**	세정담당관실
재난관리기금	1998	94,149,207	76,303,654	17,845,553	**23.39**	재난예방과
재해구호기금	2006	30,219,340	32,150,317	△1,930,977	**△6.00**	재난예방과
사회복지기금	1994	965,485	897,711	67,774	**7.55**	공감복지과 노인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3,479,964	3,761,939	△281,975	**△7.50**	위생안전과
양성평등기금	1997	240,411	279,510	△39,099	**△13.99**	여성정책과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17	922,487	0	922,487	**순증**	노인정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994	48,577,042	10,383,074	38,193,968	**45.38**	주거환경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73,242,180	84,171,595	△11,529,418	**△56.47**	경제정책과 산업진흥과
에너지사업기금	1992	16,680,911	20,416,552	△3,735,641	**△28.49**	에너지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1998	11,199,146	13,110,849	△1,911,703	**△0.30**	농축산유통과

3) 기금별 융자금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17년도 말 조성액ⓐ	2018년도 기금운용		2018년도말 조성액 ⓓ = ⓐ+ⓑ-ⓒ	증감 ⓓ-ⓐ
		수입ⓑ	지출ⓒ		
계	156,561,373	21,102,680	56,600,000	192,058,693	35,497,320
지역개발기금	11,176,150	2,759,000	0	8,417,150	△2,759,000
사회복지기금	332,000	15,000	100,000	417,000	85,000
식품진흥기금	649,630	219,330	500,000	930,300	280,670
중소기업육성기금	135,059,020	17,852,000	51,500,000	168,207,020	33,148,000
에너지사업기금	9,284,350	254,350	5,000,000	14,030,000	4,745,650
농어촌진흥기금	60,223	3,000	0	57,223	△3,000

4) 설치목적별 기금 현황

□ 기금은 그 설치목적에 따라 ① 자금 운영 기금 ② 사업성 기금 ③ 융자성 기금 ④ 적립성 기금으로 구분.

구분	기금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자금운영기금	통합관리기금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 사업 등 융자	인천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업성기금 (7개)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기여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사회복지기금	지역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지원 (융자사업 있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성평등기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국민영양향상 등 식품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융자사업 있음)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 지원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융자사업 있음)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융자성기금 (3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및 시설자금 융자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개발기금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자금 조달 도모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에너지사업기금	기후변화 대응관련 사업지원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융자	인천광역시 에너지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적립성기금 (4개)	지방세발전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 및 지방세 제도 및 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재난관리기금	재난-재해의 예방 및 응급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기금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채상환기금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	인천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기금사업 중 융자성 사업과 비융자성 사업이 혼재된 경우 융자성 사업의 비중이 더 높을 때 융자성 기금으로 분류(식품진흥기금 등은 융자성 사업이 있지만 비융자성 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업성기금으로 분류)

나.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1) 2018년 기금 조성 및 운용 총괄 분석

▢ 기금은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일정기간의 운용 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구분됨.

1) 조성규모

인천광역시 기금의 총 조성 금액은 2018년도말 현재액 기준으로 1조 2,753억 4,659만 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 1조 3,477억 7,379만 원 대비 △5.37%, 724억 2,719만 원이 감소되었음.

- 그 사유는 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에서 조성규모가 감소한 데 있고,

-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운용계획상 수입금액 2,115억 5,222만원 보다 302억 1,278만 원 더 많은 513억 6,500만 원을 구조고도화자금 등의 민간융자금, 예치금 등으로 사용하는 지출 계획이 반영된 결과 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됨.

2) 운용규모

인천광역시 2018년도 운용계획상 총수입은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80%, 238억 6,456만 원이 감소한 ,6,046억 8,362만 원임.

- 해당 수입금액을 같은 기금의 비 융자성 사업비 783억 4,552만 원, 융자성 사업비 566억 원, 예탁금[118] 1,197억 7,200만 원, 예치금[119] 1,671억 1,979만 원 등 계 6,046억 8,362만 원에 모두 지출할 계획으로 수지 균형을 맞추었음.

- 그리고 2018년도 운용금액이 2017년도 대비 3.80% 소폭 감소한 주된 사유는 예탁금원금회수 수입이 전년 대비 1,074억 6,510만 원이 감소 되는 등 수입금액 감소에 따른 것임.

3) 기금별 융자금 현황

▢ 지역개발기금 등 6개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융자금은 2017년도 말 대비 22.67%인 354억 9,732만 원이 증가한 1,920억 5,869만 원(2018년도말 현재)으로 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개발기금'은 2018년도에 지출(융자)계획은 없고 27억 5,900만 원의 수입(융자회수)계획만 있어 융자금이 2017년도 말 대비 수입금액만큼 감소한 84억 1,715만 원임.

○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도에 지출(융자)계획은 1억 원인 반면 1,500만 원의 수입(융자회수)계획이 있어 융자금이 2017년도 말 대비

---

118) 예탁금의 개념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 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으로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수금의 반대개념임.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314p)

119) 예치금의 개념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 만기, 2년 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314p)

8,500만 원이 증가한 4억 1,700만 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2018년도에 지출(융자)계획은 5억 원인 반면 2억 1,933만 원의 수입(융자회수)계획이 있어 융자금이 2017년도 말 대비 2억 8,067만 원 증가한 9억 3,030만 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에 지출(융자)계획은 515억 원인 반면 178억 5,200만 원의 수입(융자회수)계획이 있어 융자금이 2017년도 말 대비 331억 4,800만 원 증가한 1,682억 702만 원임.

○ ‘에너지사업기금’은 2018년도에 지출(융자)계획은 50억 원인 반면 2억 5,435만 원의 수입(융자회수)계획이 있어 융자금이 2017년도 말 대비 47억 4,565만 원 증가한 140억 3,000만 원임.

○ ‘농어촌진흥기금’은 2018년도에 지출(융자)계획은 없고, 300만 원의 수입(융자회수)계획만 있어 융자금이 2017년도 말 대비 300만 원이 감소한 5,722만 원임.

○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융자성기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기금의 설치목적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용이 요구됨.

다. 설치목적별 기금 운용계획 및 누적 조성 현황

(1) 사업성 기금

1-1] 융자사업이 있는 사업성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A)	전년도 수입액(B)	증감 (A-B)	항목	지출액(A)	전년도 지출액(B)	증감(A-B)
계		15,644,595	17,770,499	△2,125,904		15,644,595	17,770,499	△2,125,904
소계		965,485	897,711	67,774		965,485	897,711	67,7745
사회복지 기금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355,671	355,671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6,800	43,070	△26,270	융자성 사업비	100,000	100,00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120)	232,000	0	232,000
	예치금 회수	506,364	442,040	64,324	예치금 121)	277,814	442,040	△164,226
	이자수입	217,321	214,865	2,456	예수금 원금상환	0	0	0
	기타수입	225,000	197,736	27,264	기타지출	0	0	0
소계		3,479,964	3,761,939	△281,975		3,479,964	3,761,939	△281,975
식품진흥 기금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1,437,370	1,518,870	△81,5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22,710	222,710	0	융자성 사업비	500,000	500,000	0
	예치금 회수	2,093,084	2,175,059	△81,975	예치금	1,492,594	1,693,069	△200,475
	이자수입	144,170	144,170	0	예수금원 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020,000	1,220,000	△200,000	기타지출	50,000	50,000	0
소계		11,199,146	13,110,849	△1,911,703		11,199,146	13,110,849	△1,911,703
농어촌 진흥기금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1,475,120	2,329,203	△854,083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500	3,50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예치금 회수	10,899,396	12,560,049	△1,660,653	예치금	9,724,026	10,781,646	△1,057,620
	이자수입	147,000	189,000	△42,000	예수금원 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49,250	358,300	△209,050	기타지출	0	0	0

▢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업성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임. 특히 융자성 기금과 유사하게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2018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8억 9,771만 원 보다 6,777만 원 증가한 9억 6,548만 원이고, 비 융자성 사업에 3억 5,567만 원(전년 동일)을 사용하거나 융자성 사업에 1억 원(전년 동일)을 사용하는 등 수입액 9억 6,548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개발, 기획, 홍보 등'(2,483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지원'(5,000만 원)등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추진 및 안정성을 위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임.

- 융자성 사업으로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대여'(1억 원)은 자활 기업 당 연 1%의 고정금리로 7천만 원 범위 내 창업을 지원하거나 1억 원 이내 전세점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저리의 민간이전기능을 수행하나,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금이 없고,

120)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 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자금

121)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금액

조성규모(18년 말 현재 107억 원)가 융자성 기금(지역개발기금의 경우 18년 말 현재 9,003억 원)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할 때, 융자성 사업을 확대·운용할 경우 기금재원이 줄어드는 문제점 있음.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2018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37억 6,193만 원 보다 2억 8,197만 원이 감소한 34억 7,996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에 14억 3,737만 원(전년 대비 8,150만 원 감소)을 사용하거나 융자성 사업에 5억 원(전년 동일)을 사용하는 등 수입액 34억 4,799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모범 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내실화 지원'(6,227만 원), '인천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3,3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2,000만 원) 등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식품위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사업 추진 및 안정성을 위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임.

- 융자성 사업으로 '민간융자금(식품접객업소, 제조업소 등)' 지원사업'(5억 원)은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에 연 1~2%의 금리로 최대 3억 원 범위 내 시설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사업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가 필요할 것임.

○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2018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131억 1,084만 원 보다 19억 1,170만 원이 감소한 111억 9,914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에 14억 7,512만 원(전년 대비 8억5,408만 원 감소)을 사용하는 등 수입액 111억 9,914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비 융자성 사업으로는 ‘우수 농업인 선진해외사찰 지원’(5,000만 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 지원’(4,500만 원), ‘농촌지도사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 지원’(4,500만 원) 등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 및 안정성을 위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임.

1-2] 융자사업이 있는 사업성 기금별 누적 자금조성 및 집행액

(단위:천원,%)

기금명	기금 설치 시부터 2018년 말까지 누적 조성액						누적 집행액ⓑ (집행률 ⓑ/ⓐ*100)	잔액 (ⓐ-ⓑ)
	소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89,836,349	11,553,016	3,720,068	674,553	22,274,575	51,614,137	63,393,997 (70.57)	26,442,352
사회복지기금	24,524,485	9,153,016	558,353	674,553	10,076,736	4,061,827	13,783,015 (56.20)	10,741,470
식품진흥기금	42,318,381	(20,000)	3,072,934	0	6,638,114	32,587,333	36,341,525 (85.88)	5,976,856
농어촌진흥기금	22,993,483	2,380,000	88,781	0	5,559,725	14,964,977	13,269,457 (57.71)	9,724,026

▢ ‘사회복지기금’은 1994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도 말까지 245억 2,448만 원을 전입금, 이자수입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56.20%인 137억 8,301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107억 4,147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식품진흥기금’은 1989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도 말까지 423억 1,838만 원을 보조금, 이자수입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85.88%인 363억 4,152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59억 7,685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타 기금과 비교시 집행률은 30%p 이상 높으나 조성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함.

▢ ‘농어촌진흥기금’은 1998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도 말까지 229억 9,348만 원을 전입금, 이자수입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57.71%인 132억 6,945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97억 2,402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1] 융자사업이 없는 사업성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
계		51,129,360	12,293,536	38,835,824		51,129,360	12,293,536	38,835,824
소계		1,389,428	1,630,952	△241,524	소계	1,389,428	1,630,952	△241,524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1,202,700	961,380	241,320
	예치금 회수	1,372,358	1,601,412	△229,054	예탁금	0	0	0
	이자수입	17,070	29,540	△12,470	예치금	186,728	669,572	△482,844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소계		922,487	0	922,487	소계	922,487	0	922,487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입금	556,300	0	556,300	비융자성 사업비	810,166	0	810,166
	예치금 회수	364,000	0	364,000	예탁금	0	0	0
	이자수입	2,187	0	2,187	예치금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소계		240,411	279,510	△39,099	소계	240,411	279,510	△39,099
양성평등 기금	전입금	0	100,000	△100,000	비융자성 사업비	100,000	124,700	△24,700
	예치금 회수	155,448	94,838	60,610	예탁금	0	60,000	△60,000
	이자수입	84,963	84,672	291	예치금	140,411	94,810	45,601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소계		48,577,042	10,383,074	38,193,968	소계	48,577,042	10,383,074	38,193,96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보조금	20,345,788	3,191,640	17,154,148	비융자성 사업비	43,253,660	9,957,728	33,295,932
	예탁금 원금회수	0	6,210,000	△6,210,000	예탁금	4,000,000	0	4,000,000
	예치금 회수	27,573,204	528,440	27,044,764	예치금	1,323,382	425,346	898,036
	이자수입	576,050	352,994	223,056	예수금원 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82,000	100,000	△18,000	기타지출	0	0	0

▢ 사업성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융자성 사업 없이 비 융자성 사업을 위주로 운용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2018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액 16억 3,095만 원 보다 2억 4,152만 원이 감소한 13억 7,235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에 12억 270만 원(전년 대비 2억 4,132만 원 증가)을 사용하거나 예치금으로 1억 8,672만 원(전년 대비 4억 8,284만 원 감소)을 사용하여 수입액 13억 8,942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4,000만 원),‘남북교류협력사업’(스포츠교류・인도적 지원・학술교류 등(11억 원) 등이 있는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운용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여비’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편 성 가능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출계획상에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남북교류협력’(단위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목(301-06)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해당 사업은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아 성숙단계에 접어든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이 조기에 투입되거나 불용되는 상황발생 등 예산집행의 유동성을 감안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8년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9억 2,248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에 8억 1,016만 원을 사용하여 수입액 9억 2,248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 조사용역’(3억 3,0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복지사각지대 돌봄지킴이사업 외 6개 사업 -7,6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천가족공원 소풍나들이 행사 외 1 - 2억 3,000만 원), ’예치금‘(1억 1,232만 원)등이 있음.

○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2018년 수입액은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액 2억 7,951만 원 보다 3,9091만 원이 감소한 2억 4,041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에 1억 원(전년 대비 2,470만 원 감소)을 사용하거나 예치금으로 1억 4,041만 원(전년 대비 4,560만 원 증가)을 사용하는 등 수입액 2억 4,041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양성평등사업’(7,000만 원), ‘한부모 복지지원사업’(3,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2,000만 원) 등이 있는데,

실직한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으로 세대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직가장 동절기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탄쿠폰 및 등유 바우처’ 지원 대상[122]과 우리시에

서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123]과 비교하여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경우,

2018년 수입액은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103억 8,307만 원 보다 381억 9,396만 원이 증가한 485억 7,704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에 432억 5,366만 원(전년 대비 332억 9,593만 원 증가)을 사용하거나 예치금으로 132억 2,338만 원(전년 대비 8억 9,803만 원 증가)을 사용하는 등 수입액 485억 7,704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정비사업지원'(62억 8,646만 원), '정비사업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39억 3,000만 원), '영구임대주택 사업-우리 집 1만호 공급프로젝트-316억 204만 원), '행복주택사업 지원'(14억 3,516만 원) 등이 있음.

122)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세대 등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는 16만 9천 원의 연탄쿠폰을, 기름보일 러를 사용하는 가구에게는 31만 원 상당의 등유카드를 지원 받음

123)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0p)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중 맞춤형 교육급여 비수급자에 대한 시비 50%, 군구비 50%인 자치단체보조 사업으로 세대별 80,000원 지원(9,891세대)

2-2) 융자사업이 없는 사업성 기금별 누적 자금조성 및 집행액

(단위:천원, %)

기금명	기금 설치 시부터 2018년 말까지 누적 조성액						누적 집행액ⓑ (집행률 ⓑ/ⓐ*100)	잔액 (ⓐ○ⓑ)
	소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137,146,202	67,952,300 (42,135,617)	0	0	3,646,950	8,346,610	104,617,599 (76)	32,528,603
남북교류협력기금	13,174,487	11,000,000	0	0	1,319,040	855,447	12,987,759 (98.58)	186,728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188,487	1,186,300	0	0	2,187	0	1,076,166 (90.54)	112,321
양성평등기금	6,054,340	3,700,000	0	0	2,323,536	30,804	1,972,669 (32.58)	4,081,6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16,728,888	52,066,000 (42,135,617)	0	0	15,066,912	7,460,359	88,581,005 (12.82)	28,147,883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도 말까지 131억 7,448만 원을 전입금, 이자수입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98.58%인 129억 8,775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1억 8,672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누적 조성 금액 중 전입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83.49%인 바, 기금조달의 안정과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2017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도 말까지 11억 8,848만 원을 전입금, 이자수입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90.54%인 10억 7,616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1억 1,232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양성평등기금’은 1997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도 말까지 60억 5,434만 원을 전입금, 이자수입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32.58%인 19억 7,266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40억 8,167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은 1994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도 말까지 1,167억 2,888만 원을 전입금, 이자수입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12.82%인 885억 8,100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281억 4,788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지방세법」개정(2010.3.31, 2011.1.1 시행)으로 주요 재원이었던 도시계획세(광역시세)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자치구세)으로 통합되어 2011년 이후 안정적인 기금적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안정적인 정비기금의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며[124], 지방소비세에서 3%이상 범위에서 정비기금 재원으로 추가 조성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2017.2.8.)되어 추후 기금 확충 예정임.

124)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77p

(2) 융자성 기금

1)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337,690,208	420,819,227	△83,129,019		337,690,208	420,819,227	△83,129,019
소계		73,242,180	84,771,598	△11,529,418	소계	73,242,180	84,771,598	△11,529,418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365,000	365,00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9,615,319	26,062,404	△6,447,085	융자성 사업비	51,000,000	51,500,000	△500,00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52,089,960	57,133,326	△5,043,366	예치금	21,877,180	32,906,598	△11,029,418
	이자수입	1,536,901	1,575,868	△38,967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소계		247,767,117	315,631,077	△67,863,960	소계	247,767,117	315,631,077	△67,863,960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118,190,000	102,400,000	15,790,000	비융자성 사업비	2,110	5,090	△2,98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012,370	4,247,389	△1,235,019	융자성 사업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56,759,575	144,399,900	△87,640,325	예탁금	69,893,000	185,336,100	185,336,100
	예치금 회수	47,284,797	42,113,725	5,171,072	예치금	8,507,000	10,929,887	△2,422,887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169,365,007	119,360,000	50,005,007
	이자수입	22,520,375	22,470,063	50,312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소계		16,680,911	20,416,552	△3,735,641	소계	16,680,911	20,416,552	△3,735,641
에너지 사업기금	보조금	1,081,972	655,680	426,292	비융자성 사업비	3,848,663	3,088,595	760,068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03,577	3,412,258	△3,008,681	융자성 사업비	5,000,000	4,700,000	300,000
	예치금 회수	14,539,456	15,636,215	△1,096,759	예치금	7,832,248	12,627,957	△4,795,709
	이자수입	522,275	578,768	△56,493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33,631	133,631	0	기타지출	0	0	0

▢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분에 대해 저리의 융자를 수행하는 **융자성 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개발기금, 에너지사업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도** 운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18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847억 7,159만 원 보다 115억 2,941만 원이 감소한 732억 4,218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에 3억 6,500만 원(전년 동일)을 사용하거나 융자성 사업으로 510억 원(전년 대비 5억 원 감소)을 사용하는 등 수입액 732억 4,218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비융자성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산업단지입주기업 지원'(1억 4,000만 원),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1억 6,000만 원)) 등이 있고, **융자성 사업**으로는 0~2.8% 금리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창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인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500억 원), 소상공인에게 1.42% 금리를 적용하여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는 '유통경쟁력 강화자금'(1억 원)이 있음.

- 시설자금 융자금리(변동 2.8%) 수준에 대한 업체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 업체의 비율이 70.37%로 경영안정자금(82.01%)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나 전반적으로는 높은 편이며,

- 향후 국내·외적인 기준금리 추이 및 경제여건에 따라 대출금리 조정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인하 시 운용수익 감소, 인상 시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기금’**은 경우,

2017년 신설된 기금으로 2018년 수입액은 차입금, 이자수입 등을 합한 금액인 2,477억 6,711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에 211만 원을 사용하거나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1,693억 6,5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수입액 2,477억 6,711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예탁금으로 698억 9,300만원의 지출계획이 있는데, 이는 시 소속 재정관리담당관실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 1,508억 3,441만 원과 도로과에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비를 위한 자금 153억 원을 2.5%의 금리로 지원하는 것임.

○ **‘에너지사업기금’**의 경우,

2018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204억 1,655만 원 보다 37억 3,564만 원이 감소한 166억 8,091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에 38억 4,866만 원(전년 대비 7억 6,006만 원 증가)을 사용하거나 융자성 사업으로 50억 원(전년 대비 3억 원 증가)을 사용하는 등 수입액 166억 8,091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비융자성 사업**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3억 6,600만 원), ‘천연자동차 구입비 보조’(13억 2,700만 원)등이 있는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는 일반회계에서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및 보조 지원사업으로 240억 8,7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비 보조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금액	사업내용	비고
계	24,087,000		
에너지정책과	12,532,000	전기차 구매 600대, 전기버스 10대 구입 및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	
버스정책과	10,060,000	CNG 및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1,495,000	전기저상버스 구입 보조	

2) 기금별 누적 자금조성 및 집행액

(단위:천원,%)

기금명	기금 설치 시부터 2018년 말까지 누적 조성액						누적 집행액 ⓑ(집행률 ⓑ/ⓐ*100)	잔액 (ⓐ-ⓑ)
	소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2,326,793,951	331,254,000 (2,670,618)	331,254,000	742,701,345	218,650,486	902,040,502	1,355,441,054 (59.93)	971,352,897
중소기업 육성기금	1,056,142,681	106,200,000 (10,277,000)	95,664,000	698,814,812	145,079,666	107,203	1,003,960,572 (95.06)	52,182,109
지역개발 기금	1,189,059,907	0	235,590,000	9,543,686	45,742,905	898,183,316	288,732,207 (24.28)	900,327,700
에너지 사업기금	81,591,363	13,000,000 (2,670,618)	0	34,342,847	27,827,915	3,749,983	62,748,275 (76.91)	18,843,088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 말까지 1조 561억 4,268만 원을 전입금, 이자수입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93.7%인 1조39억 6,057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521억 8,210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기금 재원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이율(2.1%)이 기금금고에 예치하는 이율(2.01%)보다 0.9%p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기금'**은 1998년 공기업특별회계로 설치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 설치되었으며, 2018년 말까지 1조 1,890억

5,990만 원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11.7%인 2,887억 3,220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9,003억 2,770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누적 조성금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을 때의 과거 연도 집행액이 전혀 반영[125]되어 있지 않은 데 있음.

▢ **'에너지사업기금'**은 1992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 말까지 815억 9,136만 원을 전입금, 이자수입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70.1%인 627억 4,827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188억 4,308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기금 재원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이율(2.1%)이 기금금고에 예치하는 이율(2.01%)보다 0.9%p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5)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62p

(3) 적립성 기금

1]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36,095,881	124,656,579	11,439,302		136,095,881	124,656,579	11,439,302
소계		11,164,068	15,683,763	△4,519,695	소계	11,164,068	15,683,763	△4,519,695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	10,694,700	410,640	10,284,06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449,389	14,589,168	△14,139,779	예탁금	0	394,203	△394,203
	예치금 회수	10,750	394,180	△383,430	예치금	9,068	289,560	△280,492
	이자수입	9,229	289,775	△280,546	차입금원리금상환	11,155,000	15,000,000	△3,845,000
소계		563,266	518,845	44,421	소계	563,266	518,845	44,421
지방세 발전기금	전입금	488,854	453,929	34,925	비융자성 사업비	516,849	477,134	39,715
	예치금 회수	73,912	64,416	9,496	예치금	46,417	41,711	4,706
	이자수입	500	500	0	기타지출	0	0	0
소계		94,149,207	76,303,654	17,845,553	소계	94,149,207	76,303,654	17,845,553
재난 관리기금	전입금	33,650,762	22,341,021	11,309,741	비융자성 사업비	21,278,212	16,338,500	4,939,712
	예치금 회수	58,918,689	52,539,174	6,379,515	예치금	72,870,995	59,965,154	12,905,841
	이자수입	1,529,756	1,363,459	166,297	예탁금	0	0	0
	기타수입	50,000	60,000	△10,000	기타지출	0	0	0
소계		30,219,340	32,150,317	△1,930,977	소계	30,219,340	32,150,317	△1,930,977
재해 구호기금	보조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3,700,000	2,000,000	1,700,000
	예치금 회수	29,623,900	31,182,353	△1,558,453	예치금	26,519,340	30,150,317	△3,630,977
	이자수입	595,440	967,964	△372,524	기타지출	0	0	0

▢ **적립성 기금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장래의 지출을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으로 자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비융자성 사업 등**을 위주로 운용하고 있음.

○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

2018년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156억 8,376만 원 보다 45억 1,969만 원이 감소한 111억 6,406만 원이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11억 5,500만 원(전년 대비 38억 4,500만 원 감소)을 사용하거나 예치금으로 906만 원(전년 대비 2억 8,049만 원 감소)을 사용하는 등 수입액 111억 5,500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지방세발전기금'**의 경우

2018년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5억 1,884만 원 보다 4,442만 원이 증가한 5억 6,326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에 5억 1,684만 원(전년 대비 3,971만 원 증가)을 사용하거나 예치금으로 4,641만 원(전년 대비 470만 원 증가)을 사용하여 수입액 5억 6,326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지방세 납세 홍보'(3,200만 원), '지방세 관련 행사운영비'(2,72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4억 2244만 원) 등이 있음.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2018년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763억 365만 원 보다 178억 4,555만 원이 증가한 941억 4,920만 원이고, 예치금에 728억 7,099만 원(전년 대비 129억 584만 원 증가), 비융자성 사업비에 212억 7,821만 원(전년 대비 49억 3,971만 원 증가)을 사용하여 수입액 941억 4,920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법정의무적립액(2,095억 원)중 36.08%에 해당하는 756억 원만 적립하여 나머지 1,339억 원을 조속히 확보토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임.

○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2018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수입액 321억 5,031만 원 보다 19억 3,097만 원이 감소한 302억 1,934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에 37억 원(전년 대비 17억 원 증가)을 사용하거나 예치금으로 265억 1,934만 원(전년 대비 36억 3,097만 원 감소)을 사용하여 수입액 302억 1,934만 원을 모두 사용할 계획임.

-「재해구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데도 법정의무적립액(465억 원) 중 적립액이 0%에 해당되어 미 적립액 465억 원을 조속히 확보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기금별 누적 자금조성 및 집행액

(단위:천원, %)

기금명	기금 설치 시부터 2018년 말까지 누적 조성액						누적 집행액 ⓑ(집행률 ⓑ/ⓐ*100)	잔액 (ⓐ-ⓑ)
	소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차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477,839,975	401,547,932 (100,992)	19,152,818	0	39,473,644	17,564,590	331,694,510 (69.42)	101,145,465
지방채 상환기금	290,743,439	245,018,883	19,152,817	0	13,412,828	13,158,911	245,730,998 (84.52)	12,441
지방세 발전기금	2,752,212	2,645,933 (100,992)	0	0	5,287	0	2,705,795 (98.31)	46,417
재난관리 기금	143,331,532	122,794,232	0	0	16,937,245	3,600,055	68,764,265 (47.98)	74,567,267
재해구호 기금	41,012,792	31,088,884	0	0	9,118,284	805,624	14,493,452 (35.34)	26,519,340

▢ ‘지방채상환기금’은 1999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 말까지 2,907억 4,343만 원을 전입금, 이자수입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84.52%인 2,457억 3,099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1,244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지방세발전기금’은 2011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도 말까지 27억 5,221만 원을 전입금, 보조금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98.31%인 27억 579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4,641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 말까지 1,433억 3,153만 원을 전입금, 이자수입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47.98%인 687억 6,426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745억 6,726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재해구호기금’은 2006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 말까지 410억 1,279만 원을 전입금, 이자수입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35.34% 144억 9,345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265억 1,934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재난관리기금’와 ‘재해구호기금’은 설치 근거법이 다를 뿐 뜻밖의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두 기금의 운용 주체가 같은 부서(재난예방과)인 점, 큰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되지 않는 점, 사전에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응의 구분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를 통합운영하고 있음.

(4) 자금운용 기금

1)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
합계		64,123,574	53,008,353	11,115,221	합계	64,123,574	53,008,353	11,115,221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3,891,665	33,366,664	525,001	예탁금	45,647,000	14,430,000	31,217.000
	예치금 회수	22,713,048	15,549,179	7,163,869	예치금	16,200,275	15,882,222	318,053
	예수금126)	4,232,000	394,203	3,837,797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286,861	3,698,307	△411,446	예수금원리금상환	2,276,299	22,696,131	△20,419,83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그 목적대로 예탁금 및 예치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음.

○ 예탁금으로 지출계획이 있는데 이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금리 2.5%를 적용하여 79억 6,200만 원을 융자하는 것이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의 경우 개별 기금에서 당해 연도 사업 지출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던 금액을 회수해 가는 것으로 지방채상환기금(449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5억) 등의 예탁금과 지방채 상환기금 등 7개 기금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 18억 2,691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126)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원임.

2) 통합관리기금 누적 자금조성 및 집행액

(단위:천원)

기금명	기금 설치 시부터 2018년 말까지 누적 조성액						누적 집행액 ⓑ(집행률 ⓑ/ⓐ*100)	잔액 (ⓐ-ⓑ)
	소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통합관리 기금	664,084,847	0	0	536,312,949	127,771,898	0	520,207,568 (78.33)	143,877,279

▢ '통합관리기금'은 2000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2018년 말까지 6,640억 8,484만 원을 예수금, 이자수입 등에서 누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누적 조성금의 78.33%인 5,202억 756만 원을 누적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1,438억 7,727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Ⅳ 심사결과

1. 질의 · 토론 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액	감 액	
계	9,027,145,673	105,874,256	△199,401,669	8,933,618,260
일 반 회 계	6,564,522,492	57,055,570	△112,229,570	6,509,348,492
특 별 회 계	2,462,623,181	48,818,686	△87,172,099	2,424,269,768

1) 세입 증감내역

<일반회계>

재래시장상품권 판매대금 잔액 회수(일자리경제국)	△180,000
농기계임대사업(투자유치산업국)	△500,000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투자유치산업국)	△45,000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경제자유구역청)	2,215,000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국고보조금)	500,000
6차산업활성화지원사업(투자유치산업국)	60,000
아동수당 급여지급	△23,894,000
기초연금 지급	△33,330,000

<소방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26,71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탁금이자수입(환경녹지국)	△859,77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수금수입(공원녹지과)	△41,160,590
일반회계전입금(공원녹지과)	1,840,230

2) 세출 증감내역

<일반회계>

HD카메라 교체 구입비	576,000
시정주요 핵심사업 지원	△50,000
무상급식 지원(고교무상급식)	21,300,000
일반수용비(재정기획관실)	△50,000
예비비	△17,159,322
국경일행사	10,000
인천민주화운동센터운영	175,000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사업 지원	10,000
통일관 장비구입비	3,800
통일관 민간위탁 관리	10,000
생생시정 바로알기 서포터즈활동 지원	3,000
모범청원경찰 및 공무직 선진체험 견학실시	25,000
3.1절 기념행사	20,000
국궁장 시설개선비	10,000
신임인재양성과정 교육운영 물품 구입비	△20,000
실내체육관 방송장비 구입(인재개발원)	98,000
인천복지정책센터 운영	△70,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선진지 우수시설 견학	24,000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100,000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30,000
장애인단체육성 공모사업	150,000
서도회관 개보수비	△80,000
청소년 호국역사현장 탐방	△86,000
장애인복지관 운영	20,000
호국보훈도시 인천 문예 동영상 작품 공모전	3,000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15,000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30,000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0,000
인천특산물 홍보 안내문 등 제작	5,000
거리 노숙인 일시보호 사업	30,000
현충시설 사진첩 제작 구입	10,000
인천세계전쟁과 평화포럼	100,000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	300,000
경인의료 재활센터병원 운영비	80,00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3개소)	15,000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처우개선비	24,960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대여점) 운영 지원	500,000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등	12,900
출산, 육아 가족애 패스티벌 개최 지원	50,00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48,600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처우개선비	9,840
청소년대축제	50,000
청소년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13,680
재활용품수집노인 조끼구입 등	100,000
아동수당 급여지급	△28,089,000
기초연금	△41,188,000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20,000
청년활동 생태계 기반 조성	50,000
인천 발전 청년 창안공모	30,000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20,000
아동복지 종합안내서 제작	18,000
어린이주간 운영	30,000
인천가정위탁 지원센터	15,000
I-Mom 출산 축하 지원	11,800,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10,000
생명의 바다 그리기 대회	50,000
미추홀 연등축제 지원	30,000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100,000
문학산상 음악회	△30,000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운영지원)	△150,000

공기부양정 운영	△131,485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지원	70,000
문학산 랜드마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120,000
MICE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	125,000
체육회 사무처 운영	△60,000
체육진흥사업	120,000
인천스포츠클럽사업	△98,00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 등	50,000
인천 랜드마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120,000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 포함)	130,000
9.15기념 제35회 전국남녀궁도대회	20,000
섬, 농촌 등 청년 문화예술인 레지던시 사업(2개소)(출연금)	112,000
기획공연(문화예술회관)	82,000
학대피해아동쉼터 처우개선비	1,920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지원	100,877
GCF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146,000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및 냉·난방시설 설치	416,000
인천희망의 숲 조성	100,000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	66,000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9,000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60,000
악취개선보조금 지원사업	40,000
무인악취 포집기 등 구입 설치	40,000
지방하천 유지관리	415,000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4,000,00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840,230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원	200,000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200,000
탐조망원경 구입	12,000
반려견 동물놀이터 조성	236,000
산림치유센터 건강측정장비 구입	30,000
노조간부 특별교육	25,000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추진	20,000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2,000
근로자의 날 행사	10,000
노동조합 체육대회	20,000
전국화학노동조합 체육대회	5,000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사업	50,000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 환경개선 지원	△300,000
협동조합 활성화	10,000
인스타 카페 구축	250,000
인스타 카페 운영비	100,000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	△30,000
도서지역(지도)자가발전 운영지원	△100,000
농기계 임대사업	△750,000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67,500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5,000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54,500
파리천적벌 보급지원	10,000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63,000
시유지식재산권 및 직무발명관리	40,000
뷰티사업 육성지원	300,000
낙농 도우미 지원	10,000
소형도정시설 설치지원	50,000
신소득작목 보급육성 시범	△10,000
도시농업체험교육농장 관리 인부임	△5,000
기술보급시범사업운영 재료 구입	△5,000
인천도시농부아카데미운영	12,000
인천도시농 아카데미 실습재료	33,000
스마트시티㈜ 민관협력사업 출자금	2,215,000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33,000
가로등 통합제어함 설치 시범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63,000
골목길안전한거리만들기(군・구보조)	100,000
경관도로 조성사업	△500,000
준공영제 재정지원(운수업계 보조금)	△9,822,143
인천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고취 지원사업(기타보상금)	1,200,000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	100,000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	50,000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	607,143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20,000
수산물 저장용기 지원	58,000
관내 도로유지보수(무네미로 저소음 도로포장)	1,300,000
서해5도방문의해사업(사업명변경:타시 · 도민여객운임지원사업)	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미추홀참물홍보행사	30,000
언론사 광고	50,000
수익적지출 예비비	320,000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중부수도)	△100,000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남동부수도)	△100,000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북부수도)	△100,000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서부수도)	△100,000
상수도GIS 공공측량사업	△300,000
자본적지출 예비비	300,000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금	△1,000,000
자본적지출 예비비	△2,315,000
스마트시티 민간협력법인 출자금	2,215,000
공원테니스장 코트정비사업	△100,000
씨사이드파크 물놀이장 편익시설 확충 및 수목식재등	400,000
인천글로벌 캠퍼스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	600,000
세계적인 관광·문화축제 발굴 개발비	200,000
<소방특별회계>	
시민화재예방 인식제고(예방안전과)	△100,000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관리 물품구입(현장대응과)	140,000
소방청사 내진보강(소방행정과)	3,146,866
도서 및 농촌지역 의소대연합회 운영지원(현장대응과)	24,000
예비비	△1,384,149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문학공원 조성(예탁금)	△6,600,000

장미공원 조성(예탁금)	△3,175,000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예탁금)	△28,467,590
자치단체공원조성 지원 사업(예탁금)	△2,918,000
원도심학교 손소독기 구입	300,000
아라뱃길실내족구장	500,000
예비비	39,500,82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문학공원 조성	△3,900,000
장미공원 조성	△3,175,000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28,467,590
소월미공원 조성	△6,000
농원공원 조성	△130,000
학나래공원 조성	△130,000
고잔공원 조성	△52,000
석촌공원 조성	△1,950,000
백운공원 조성	△500,000
관청공원 조성	△150,000
문학공원 조성(예수금이자상환)	△137,876
장미공원 조성(예수금이자상환)	△66,327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예수금이자상환)	△594,700
자치단체공원조성 지원 사업(예수금이자상환)	△60,867

나.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3.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부대의견 채택

○ 현충시설 사진첩 제작 구입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다.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심사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제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한다.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금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은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추경에 반영한다.

○ 행사비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전면적으로 평가하여 2019회계연도부터는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계상한다.